

輸入水産物 流通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洪 性 杰
朱 文 培
白 基 昌

1997. 12



韓國海洋水産開發院
Korea Maritime Institute

머 리 말

오늘날 국내의 수산물 수급조건은 소득의 실질적인 증가, 고용형태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에 의한 국내수산물 소비시장의 성장, 소비형태의 다양화 등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어업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기와 같은 국제환경의 성립을 배경으로 수입수산물이 새로운 국내공급조건으로서 그 위치를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산물시장은 1989년 개최된 GATT/BOP 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수산물 전품목이 '수입자동승인품목화'하여 단계별로 수입자유화가 계속되어 왔으며, 1997년 7월 1일자로 마침내 전면 자유화되었다.

수입개방에 따라 국내수산물시장의 수급과 가격은 국제수산물시장의 가격 변동과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내 산업정책도 각종 보조금의 감축의무와 더불어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에 합치시켜 나가야 하며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방어적인 시각에 입각한 수산물수입 억제방안이나 열위품목의 수입확대 우려론으로서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입수산물의 확대는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완전개방화가 현실로 나타난 현시점에서 무조건 방어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첫 단추로서 수입수산물의 국내유통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책담당자는 물론이고 연구자 및 유통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서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7년 12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長 洪承湧

第 1 章 序 論

제 1 절 研究의 目的

우리나라의 수산물시장은 1989년 GATT/BOP 위원회에서 합의에 따라 단계별로 수입자유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수산물 전품목이 1997년 7월 1일자로 마침내 '수입자동화 승인품목화'하여 전면개방되게 되었다(잔존 31개 수입제한품목이 자유화됨).¹⁾ 그 뿐만 아니라 1994년 UR협상의 타결로 국내 수산업은 WTO체제하의 새로운 무역질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은 무한경쟁체제하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수산업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농업과 함께 국민의 영양과 건강에 봉사하는 식량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역할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산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약 45.9%²⁾를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형 식생활에도 빼놓을 수 없는 식료

1) 일본의 경우, 1961년에 수산물 수입을 전면개방하였으며 수입자유화를 계기로 수산물 수입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이었다. 수산물 수입개방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71년에 마침내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물론 당시의 수산물 무역역조는 일본의 총무역액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부분이었지만, 수산물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2) 1995년도 기준, 우리 나라의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구성(비)을 보면, 총공급량 38.68g 중 축산물 20.94g(54.14%), 어패류 17.74g(45.86%)으로 나

이다. 또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식품지향적 소비형태의 변화로 수산물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 급어종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입은 내수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³⁾ 전체 수산물 수입을 금액면에서 보면, 1980년도 약 3,728만 달러에서 1985년도 약8,323만 달러, 1990년도 약3억 6,810만 달러, 1996년도 약10억 8,046만 달러를 기록하여, 1996년도의 금액은 1980년도에 비하면 약29배, 1990년도에 비하면 약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그리고 수입상품의 종류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산물과 차별화 되지 않는 중국산 수산물은 대부분 내수용으로 1990년도에 비해 약 39.9%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이와 같이 수산물 수입이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품목이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산물의국내유통채널이나 판매형태 및 국내산과의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거의 파악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동시에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 거래행 위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HS 4단위 기준 11개 품목(활어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도'⁶⁾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유통단계에서 원

타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년도 식품수급표」(1996.12)를 참조.

3) 우리 나라의 내수용 수산물 수입은 1992년도 191백만 달러, 1993년도 267백만 달러, 1994년도 418백만 달러, 1995년도 527백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산물회, 「수산물연감」 1994, 1995, 1996년도를 참조.

4) 해양수산부, 「1996년도 수산물수출입실적」을 참조.

5)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수입 금액은 1991년도 약2,900만 달러에서 1993년도 약4,447만 달러, 1994년도 1억 1,183만 달러, 1996년도 2억 1,735만 달러로 1994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제4항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요령'(1993. 7).

산지 표시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상황하에 수산물수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버림에 따라 국내 유통과정에서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등 불법적 유통현상이 다발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유통서비스 기능도 다른 생산과정과 같이 효과적인 가격형성 기구의 운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효율적인 유통체계는 상품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통서비스와 소유권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전을 가능케 해야 하고, 효과적인 가격형성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수산물의 유통상에서 야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수입수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점들이며, 그로 인하여 효율적인 유통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 시대에 즈음하여 합리적인 수산유통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의 유통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서 수산물 수입의 증가와 다양화는 수산물 수입개방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수입수산물이 국내 가격안정과 수급균형 유지의 조절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研究의 對象 및 方法

본 연구는 농축산품 유통과는 달리 복잡다기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산물 유통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수입수산물에 한정하여 유통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기존의 수산유통관련 연구자료와 통계자료의 검

토분석에 의한 문헌조사법과 면접조사법을 병용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현황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로서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방법을 기술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우선 제1절 수산물 유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서는 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및 수산물 수입자유화의 배경과 영향, 세계의 수산물 생산동향과 무역구조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제2절에서 우리 나라의 수산물 수급현황과 수입동향 및 수산물 수입의 구조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배경으로 제3장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국내에 수입된 수산물의 과다한 유통마진과 상품성저하,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는 원인 등을 탐색하기 위해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와 유통마진을 분석할 것이다. 제2절에서는 수입수산물의 물량이나 가격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변수로서 수입수산물의 유통정보체계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검토하기 위해 먼저 수출입관리제도의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그 가운데 수입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향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에 병행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 및 추후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第 2 章 水産物 流通環境의 變化와 需給現況

제 1 절 水産物 流通을 둘러싼 環境變化

1. 水産物 流通環境의 變化

우리 나라의 수산업 환경은 198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변화요인은 수산물 유통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산업 환경변화는 수산물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변화를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약 11년전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재편을 목적으로, UR 다자간 무역협상이 1986년 9월부터 약8년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드디어 WTO라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무역질서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 나라도 1989년 10월 GATT BOP(Balance of Payment : 국제수지보호, 18조 B항)⁷⁾국 자격으로부터 졸업하게 됨으로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개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7) GATT 제18조 B항 요지 : 개발도상국으로서 외환수지사정이 어렵고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 외환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상품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

1997년 7월 1일 수산물수입의 전면개방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4년 11월 6일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세계는 바다 분할이라는 본격적인 해양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제2의 국토인 해양자원을 보존·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과 국가정책이 요청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또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체제의 정착으로 해양분할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그것을 배경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해양수산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다국간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 수역에 있어서도 다국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확정 문제가 첨예한 외교문제화하고 있다. 그리고 넓어진 주권적 관할수역의 어업자원관리 및 어로활동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공동 이용수역의 변화에 따른 한·일, 한·중 또는 한·중·일간의 어선세력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또, APEC 출범과 OECD 가입으로 수산물수입의 자유화가 더욱 촉진되고 책임있는 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1993년 “편의국적선 금지협정”의 체결, 1995년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및 “경제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자원관리에 관한 이행협정” 등이 체결됨으로써 공해조업 자유가 크게 제한되게 되었고, 연안국의 어업자원 관리권한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생산측면에서 어업생산의 구조적 변화를 들 수 있다. <표 2-1>은 어업별 생산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1965부터 1986년 까지의 어업생산을 보면 일반해면어업이나 양식어업 및 원양어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86년을 분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체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어업별 생산의 구조적 변화

(단위:천M/T)

어업별 연도	계	일반해면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
65	637	554	74	9	-
70	935	726	119	90	-
75	2,136	1,210	351	566	9
80	2,410	1,372	541	458	39
85	3,103	1,495	788	767	53
86	3,660	1,726	947	930	57
87	3,332	1,526	883	883	57
88	3,209	1,512	887	774	36
89	3,319	1,510	848	930	31
90	3,275	1,542	773	925	35
91	2,983	1,304	775	874	30
92	3,289	1,295	936	1,024	34
93	3,336	1,526	1,038	741	31
94	3,477	1,487	1,072	887	31
95	3,348	1,425	997	897	29
96	3,244	1,624	875	715	30

자료 : 농림부, 「1997년도 농림부 주요통계」 (1997. 6).

그 이유로서는 원양어업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선포, 고율의 입어료, 할당량의 격감 등을 들 수 있으며, 양식어업 및 연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노후화, 밀식, 육상으로부터의 바다오염 그리고 어장의 부영양화 등에 의한 적조현상, 남획 등을 들 수 있겠다.⁸⁾

셋째,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식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 건강식품인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요증가 추세 속에서도 고급어종에 대한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1965년 18.0kg에서 1975년 29.9kg, 1985년 37.2kg, 1990년 36.3kg, 1995년 46.0kg으로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5년의 소비량은 30년전인 1965년에 비하여 약 2.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그리고 국민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에 있어서도 수산물 공급량은 1965년 6.4g, 1975년 10.3g, 1985년 16.4g, 1995년 17.7g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¹⁰⁾ 그런데 축산물의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전체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에 있어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다. 다시 말하면 양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축산물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소비지 유통시장의 구조변화를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6년부터 우리 나라의 유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의 철폐에 따라, 유통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할인점과 창고도매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간에도 대형화·체인화를 추구하면서 유통부문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1993년부터 할인점의 형태를 갖춘 신업태와 도매클럽의 출현은 매장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국내 소비지 유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은 중

8) 한병세, “수산물 유통현황과 개선방향”, 「농업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1991. 12), pp.66-67 참조.

9)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 제2장 제2절 <표 2-12>를 참조.

10) 본 연구 제2장 제2절 <표 2-13>을 참조.

래의 원어중심에서 최근에는 조리가 가능한 간편식품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소량화, 포장화, 다양화, 고급화 지향의 구매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외식산업은 규모면에서 20조원을 상회하는 독립된 거대시장을 형성하는 새로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지 유통시장의 구조변화는 산지위판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상이나 외식업체에 이르는 직출하 형태의 유통체계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¹¹⁾

넷째, 산지유통의 자유판매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연 근해 수산물 산지유통을 규제하여 온 강제상장제가 1997년 9월 1일부터 자유판매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자유판매제는 1994년 1월 20일 구수산청의 3단계 수산물 의무상장제 추진방안에 따라 1994년 12월 10개 품목의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1995년 3월로 1단계 31개 품목에 대해 자유판매제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7월 2단계로 3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해 자유판매제를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잔여 38개 품목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실시되어, 마침내 모든 어획물에 대한 자유판매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자유판매제는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생산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과 새로운 유통체계 및 서비스 개선, 위판구조의 개선이라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으나, 산지위판장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형유통업체·수출회사·가공업자·냉동창고업자·객주 등으로 직거래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예상되는 위판물량의 감소는 2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위판수수료의 감소를 초래하여 산지수협과 산지위판장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¹²⁾

이상과 같은 요인은 앞으로도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11) 홍성걸, "유통환경의 변화와 산지시장구조의 변화", 1997년도 식품유통학회 주제발표원고, p.6.

12) 위의 글, pp.3-4.

와 같은 제요인은 수산물 유통 자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 水産物 輸入自由化의 背景과 影響

우리 나라는 UR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87년 IMF 8조국으로의 이행과 19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조항(BOP : 18조 B항)¹³⁾을 원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개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GATT 전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규정(제1조)을 준수하여야 하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 BOP(Balance of Payment : 국제수지보호)사정이 급박한 경우 일시적으로 수량 제한을 허용하되, 매년 GATT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2조), 저생활수준의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개도국들이 원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원활한 경제개발을 위해 국제수지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일정수준의 수입제한을 허용하되, 2년마다 GATT와 협의하여야 한다(제18조).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 가입 이래 GATT 18조 B항(BOP조항)에 대한 수입규제 국가로서 국제수지위원회에서 2년마다 국제수지 협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86년부터 3년간 국제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7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서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금지」 판정을 받게되었다.

GATT 18조 B항의 원용 중단은 GATT 11조 1항의 「수량제한의 일

13) GATT 제18조 B항 요지 : 개발도상국으로서 외환수지사정이 어렵고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 외환수지의 방어를 목적으로 상품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

반적 철폐」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는 GATT 가입 당시 특정 조문의 준수에 대한 의무면제(Waiver)를 받지 않았으므로 GATT의 모든 조문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다만, 당시 우리 나라 잔존수입제한 품목이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농수산물인 점을 감안하여 오는 1997년 7월 1일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인정받았다. 유예기간 동안에 있어서 2차에 걸쳐 개방 예시계획을 수립하여 1992~94년간의 1차 예시계획은 1991년 3월에, 그리고 1995~97년까지의 2차 예시계획은 1994년 3월에 각각 예시하였다.

<표 2-2> 수입자유화의 추이

총품목수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7월
390개 (자유화율)	334 (86%)	6 (87%)	19 (92)	31 (100)

자료 : 한국수산회, 「1996년도 수산연감」 (1997.4), p.169.

수입자유화는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국내생산이 적은 품목·비기호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입개방으로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개방해 왔다.

우리 나라의 수산물 수입자유화는 UR 협상이 개시된 198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제1차 예시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인 1991년까지는 일부 품목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의 쌍무간 통상협상에 의해 타의적으로 개방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UR 협상 이후 전개될 비관세장벽 제거에 따른 충격 흡수와 다자간 협상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자율적 개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에 개방된 품목은 전체 수산상품의 33%에 이르는 많은 품목이긴 하나 대부분의 품목이 국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품목으로 실질 개방화율은 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후 예시계획에 의한 개방품목 역시 '예시계획은 연별로 균형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GATT BOP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방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실질 개방화율은 대체로 낮았다. 그러나 수산물 수입개방 예시가 UR협상 과정에서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개방요구(Request)와 맞물려 실질 이상의 심리적 영향은 컸다.

수산물 수입개방 예시계획에 따른 31개 잔존 수입제한 품목이 금년 7월 1일부터 자유화됨으로써 HS분류상의 390개 전체 품목에 대한 수량제한이 전면 철폐되었다.

<표 2-3> 1997년도 수입자유화 품목

제품형태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산것	뱀장어, 방어, 넙치	전복		기타연체동물	
신선냉장	고등어, 명태, 갈치, 기타어류				
냉동	갈치, 조기, 떡장어, 홍어, 밀크피쉬, 민어, 오징어, 기타어류	바지락	새우와 보리새우살	기타연체동물	
건조	멸치		새우와 보리새우	갑오징어와 오징어	김
통조림	다랭이(3) 가다랭이(3)				
조제품					김

자료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번의 자유화 품목은 개방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 것으로서 방어와 넙치 등은 천해 어류양식어업의 주종을 이루는 품목이고 뱀장어는 국내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품목에 해당한다. 신선·냉장물에 해당되는 품목은 연근해어업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국내 대중소비 품목이다. 냉동물로서 조기와 갈치는 대표적인 연근해어종이지만 최근 생산이 격감하여, 국내외 가격차이가 매우 커서 국내 잠재수요가 큰 품목이다. 민어는 원양어업 생산에 있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국내수요가 비교적 큰 품목이다. 이 외에도 오징어, 새우 등은 연안어업의 주조업대상 어종이며, 김은 우리 나라 양식어업중 가장 많은 어민이 종사하고 있어 연안어민의 어업경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품목이 완전 자유화함에 따른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계측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들 품목의 어업별 구성을 보면 <표 2-4>와 같다.

개방대상 품목중 수산물수입이 생산어민의 경제적 잉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활어, 신선·냉장, 냉동품 등 9개 어종만을 대상으로 어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대형 근해어업에서의 어획조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는 41.6%, 대형트롤이 82.3%, 기선권형망이 99.7%, 근해안강망이 40.4%, 근해채낚기가 91.1%, 근해유자망이 64.6%, 연안안강망이 4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7년 7월 개방된 품목은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당해 어종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국내 연근해어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개방대상품목의 어업별 구성비

(단위: M/T, %)

구분		총생산량	고등어	갈치	조기	홍어	민어
합계			200,481	102,011	45,198	2,227	23,371
근해	대형기저(쌍)	114,486	6,087 (3.0)	17,173 (16.8)	22,947 (50.8)	872 (39.2)	587 (2.5)
	대형기저(외)	13,540			1,406 (3.1)		217 (0.9)
	대형트롤	99,714		16,875 (16.5)	968 (3.8)		
	서남구기저	26,797					340 (1.5)
	대형선망	227,995		3,966 (3.9)			
	기선권현망	140,170	159,820 (79.7)	40,836 (40.0)	14,456 (32.0)	365 (16.4)	
	근해안강망	137,650					
	근해채낚기	93,856					
	근해유자망	55,421				2,308 (5.1)	500 (22.5)
연안	연안안강망	36,736	1,152 (0.6)				
	연안유자망	63,725					
	연안연승	19,280		1,380 (1.5)			
원양				7,415 (7.3)			21,207 (90.7)

(표 계속)

구분		멸치	명태	넙치 (활어)	오징어	대상품목 합계 및 총생산 대비율(%)
합계		230,697	343,713	6,733	394,004	
근해	대형기저(쌍)					47,666 (41.6)
	대형기저(외)					1,623 (12.0)
	대형트롤				64,220 (16.3)	82,063 (82.3)
	서남구기저					340 (1.3)
	대형선망				9,735 (2.5)	163,786 (71.8)
	기선권현망	139,714 (60.6)				139,714 (99.7)
	근해안강망					55,657 (40.4)
	근해채낚기				81,966 (20.8)	85,510 (91.1)
	근해유자망	32,266 (14.0)				35,815 (64.6)
연안	연안안강망	4,015 (1.7)				15,230 (41.5)
	연안유자망	6,448 (2.8)	3,631 (1.1)			12,756 (20.0)
	연안연승		2,061 (0.6)			3,441 (17.8)
	넙치양식어업			6,733 (100)		6,733 (100)
원양			336,810 (98.0)		193,107 (49.0)	

자료 : 홍성걸, 김정봉, “수산물 수입개방이 국내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
산물 수입개방대책 심포지움(97.6)

추정 대상품목은 1996년 현재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국내가
격이 수입가격(관세포함) 보다 높은 품목으로 갈치, 조기, 홍어, 명태,
민어, 오징어가 있다.

추정결과는 <표 2-5>와 같이 6개 품목의 개방에 따라 발생하게될
생산자잉여의 감소액은 2,0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명태가 연간 약 1,020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갈
치, 조기도 각각 331억원, 329억원의 잉여감소가 예상된다.

<표 2-5> 품목별 생산자잉여 감소 추정금액

(단위 : 억원)

구분 품목	생산량 ¹⁾	국내가격 ²⁾	수입가격 ³⁾ (관세포함)	생산자잉여 감소(억원)
갈치	102,011	2,317	1,993	331
조기	25,719	5,354 ⁶⁾	4,064 ⁷⁾	329
홍어	2,227	3,928	3,408	12
명태	223,198	985	457	1,020
민어	2,164 ⁴⁾	6,147	2,318	83
오징어	394,004	1,426	1,359	264
합계				2,039

주 : 1) 생산량은 1995년 농림수산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품목별
생산량중 4)는 원양산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어 국내생산량 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국내가격은 해양수산부,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및 개방대책」, 1997.
5 자료를 이용하였음. 단, 6)은 1995년도 농림수산통계연보의 생산액
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하였음.

3) 수입가격은 해양수산부,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및 개방대책」, 1997.
5 자료를 이용하였음. 단, 7)은 1995년도 수산청, 「수산물 수출입 실
적」의 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하였음.

각 어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을 어업별 당해어종 생산비율을 기준으로 한 어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표 2-6>과 같이 명태와 오징어의 어획비율이 높은 원양어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해어업에 있어서는 대형기저(쌍), 안강망, 대형트롤 등의 순서로 손실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어업별 생산자잉여 감소액 (단위 : 억원)

품 목		합계	갈치	조기	명태	홍어	민어	오징어
총 잉여감소액 ¹⁾		2,039	331	329	1,020	12	83	264
근해	대형기저(쌍)	249.9	55.6	167.1		4.7	22.5	
	대형기저(외)	18.5		10.2			8.3	
	대형트롤	110.1	54.6	12.5				43.0
	서남구기저	13.0					13.0	
	대형선망	19.5	12.9					6.6
	근해안강망	239.7	132.4	105.3		2.0		
	근해채낚기	66.4	11.5					54.9
	근해유자망	47.9		16.8		2.7	28.4	
	소 계	765.0	267.0	311.9		8.7	72.3	104.5
연안	연안유자망	11.2			11.2			
	연안연승	11.1	5.0		6.1			
	소 계	22.3	5.0		17.3			
원양		1,129.0			999.6			129.4

주 : 총 잉여감소액은 타어업에 의한 잉여감소액이 포함되지 않아 각 어업의 합계액과 차이가 있음.

<표 2-7> 근해어업 종류별 경영실태

구분	매출액 순이익율 (%)		인건비 비중 (%)		생산자 잉여감소 (억원)
	'85~'87 평균	'93~'95 평균	1985	1995	
합계					
대형기저(쌍)	17.7	9.2	16.5	28.2	49.9
대형트롤	20.0	24.9	19.6	29.1	110.1
대형선망	19.0	-1.7	21.8	32.6	19.5
근해안강망	15.3	9.3	17.0	39.3	239.7
근해유자망	19.2	29.3	48.0	45.6	49.7

자료 : 홍성걸, 김정봉, 전개논문.

수입개방으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는 5개 근해어업의 어업경영 상황은 <표 2-7>에서와 같이 과거 10년전에 비하여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경영규모의 축소 또는 어업포기 경영체 발생 가능성 높다. 특히, 경영성과가 상당히 낮은 대형선망, 대형기저(쌍), 근해안강망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종의 어업경영비에 대한 인건비 비중의 증가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어업생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가 예상되는 조기, 갈치 품목과의 시장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世界의 水産物 生産動向과 貿易構造

가. 世界 水産物 生産動向

세계의 수산물생산은 일시적으로 정체현상을 보였으나 199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하여 1993년도에는 1억 톤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FAO통계에 의하면 1994년도는 1993년도보다 약 7.1% 증가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112,910천톤으로 1994년도 110,538천톤보다 약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1994년의 어업생산의 경우, 내수면의 어패류 생산이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종별로 보면 페루멸치가 전년대비 약 43%나 증가하여 12,000천톤을 기록하였다. 1995년의 생산량은 페루가 자원보호 관점에서 금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영향에 따라 앞으로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별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전년(1994년) 보다 18% 증가한 24,433천톤을 생산하여 전년에 이어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이것은 세계 총생산량의 약22%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2위는 페루로 1994년 11,997천톤을 생산하여 1993년 대비 약 37%나 증가하였으나, 1995년도는 8,943천톤으로 전년(1994년)보다 무려 26%나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페루 어업생산량의 약79%(1994년 기준)를 차지하는 다핵성 부어류인 페루멸치 한 어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간 연장하는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 칠레가 7,591천톤으로 전년대비 3% 감소하여 제3위를 차지하였다.

<표 2-8> 세계의 수산물 생산추이

(단위 : 천 M/T)

연도 국명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세계전체	72,047	86,569	97,928	97,799	99,414	103,172	110,538	112,910
중 국	5,159	7,804	13,540	14,432	16,322	17,568	20,719	24,433
페 루	2,709	4,138	6,875	6,949	6,871	9,010	11,997	8,943
칠 레	2,817	4,804	5,195	6,006	6,502	6,035	7,838	7,591
일 본	10,435	11,411	10,356	9,393	8,503	8,081	7,396	6,757
미 국	3,651	4,948	5,868	5,486	5,599	5,934	5,922	5,634
인 도	2,445	2,826	3,794	4,044	4,232	4,546	4,738	4,904
러시아연방	-	10,523	10,389	6,814	5,611	4,461	3,780	4,374
인도네시아	1,842	2,333	3,044	3,252	3,442	3,685	3,917	4,118
타 이	1,798	2,227	2,786	2,968	3,240	3,395	3,537	3,502
노르웨이	-	2,119	1,711	2,095	2,547	2,561	2,551	2,807
한 국	2,091	2,650	2,843	2,521	2,696	2,649	2,700	2,688

자 료 : 1980년~1992년 FAO STAT (<http://apps.fao.org>).

1993년~1995년 『1997年度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참조

주 : 1) 1995년도 생산량순으로 상위 11위 국가를 배열한 것임.

2) 1991~1994년 한국의 순위는 10위임.

그런데 오랫동안 세계 제1위를 지켜오던 일본의 어업생산량은 1988년 12,780천톤을 최고로 일관되게 감소하였고, 1995년 어업생산량은 약30년전의 수준인 6,757천톤까지 격감하여 제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은 1978년 이후 어업생산, 유통분야의 혁신을 통해 어업생산량이 급증하고 있고, 수산물 총생산량이 1950년 91만톤에서 1995년에는 25.3배인 2천5백만톤으로 늘어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주로 양식업의 발달에 의한 것인데, 95년 현재 해면과 내수면의 양식면적은 78년보다 226만ha 늘어난 508만3천ha이며, 생산량은 1천10만톤이나 늘어난 1천131만톤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5년도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은 1994년의 2,70만톤보다 약 1만톤이 감소하여 269만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4%를 차지하여 세계 제1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청어, 정어리, 멸치류는 2,202만톤을 생산하여 1994년보다 384만톤이 감소하였으며, 명태, 대구, 민대구류는 1,062만톤을 생산하여 전년(1994)대비 65만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다랭이, 참치류, 새치류는 478만톤을 생산하여 전년보다 102천톤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연어, 송어류는 210만톤을 생산하여 전년보다 286천톤이 증가하였다.

나. 世界의 水産物 貿易構造

일반적으로 수산물 교역은 국내의 식용소비에 대응하여 확대되는 것만이 아니라 외화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으로서의 성격 또는 사료나 유지원료와 같은 비식용 용도로 생산되는 등 국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면서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면, 칠레, 페루의 경우에는 비식용 용도의 수출형 생산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은 국내소비 증가를 배경으로 한 수입 증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수산물 수출국으로서 수출품목의 변화에 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수산물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 제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공급과 소비 양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출산업으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다.¹⁴⁾

이상과 같이 주요 수산국의 대부분이 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으면서도 자국의 공급도 증가하는 양면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수산물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기준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별 순위로는 태국, 미국, 노르웨이, 중국, 덴마크순이고, 우리 나라는 전년보다 10.9% 증가한 1,565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수산물 수입면에서는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순이며, 우리 나라는 826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세계 15위를 기록하고 있다(<표 2-9> 참조).

14) 장영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수산물무역의 전망", 수산물 수입개방대책 심포지움(1997.6).

<표 2-9> 세계의 수산물 무역구조(1995년)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순 위	수출		수입	
	국명	금액	국명	금액
1	태국	4,449	일본	17,853
2	미국	3,384	미국	7,141
3	노르웨이	3,123	프랑스	3,221
4	중국	2,854	스페인	3,106
5	덴마크	2,460	독일	2,479
6	대만	2,328	이탈리아	2,281
7	캐나다	2,314	영국	1,910
8	칠레	1,704	홍콩	1,828
9	인도네시아	1,689	덴마크	1,574
10	러시아	1,628	기타	14,632
11	한국	1,565		
12	네덜란드	1,447		
13	기타	23,090		
세계 합계		52,035		56,025

자 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95.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액은 1994년 718백만\$, 1995년 826백만\$, 1996년 1,080백만\$임.

세계의 주요 어종별 수입구조를 보면, 우리 나라도 연어, 새우, 닭새우, 게와 같은 고급어종의 수입 순위에 있어서도 금후 빠른 기간내에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영향으로 상실된 어장을 대체하는 성격을 지닌 오징어, 대구류의 수입은 이미 수입 상위국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주요 수산물의 수입국별 순위

(단위 : 천달러)

1

구분 순위	연어		새우		닭새우		계	
	국명	수입액	국명	수입액	국명	수입액	국명	수입액
1	일본	986,995	일본	2,948,895	미국	386,010	일본	894,365
2	프랑스	334,477	미국	2,110,944	일본	275,488	미국	85,414
3	미국	263,535	스페인	521,087	프랑스	145,044	중국	36,407
4	덴마크	246,645	프랑스	330,549	이태리	82,686	스페인	33,432
5	독일	212,256	캐나다	173,262	스페인	71,890	프랑스	29,616
6	스페인	89,515	덴마크	158,714	캐나다	32,229	캐나다	10,268
7	이태리	52,956	이태리	147,373	독일	15,611	태국	9,472
8	캐나다	46,522	영국	119,782	영국	15,498	한국	6,826
9	영국	38,570	독일	110,545	네덜란드	12,317	말레이시아	5,272
10	네덜란드	22,258	아일랜드	92,610	덴마크	8,768	독일	5,035
11	한국	6,249	호주	49,938	아일랜드	3,426	이태리	3,487
12	태국	4,274	말레이시아	36,468	중국	2,594		
13			태국	27,902	한국	2,100		
14			한국	9,110				

자 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93.

(표 계속)

구분 순위	오징어 · 문어		대구	
	국명	수입액	국명	수입액
1	일본	869,072	덴마크	105,520
2	이태리	812,266	영국	93,647
3	스페인	282,655	프랑스	92,234
4	미국	78,982	중국	71,865
5	한국	48,004	일본	58,563
6	중국	39,189	이태리	45,789
7	프랑스	37,561	한국	45,174
8	태국	31,405	캐나다	43,831
9	네덜란드	30,408	미국	43,490
10	독일	20,379	독일	37,882
11	캐나다	14,446	네덜란드	29,269
12	영국	4,766		
13				
14				

자 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93.

최근 세계 각국에서 어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수산물 무역분야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수산물 수급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을 배경으로 하여 확대경향에 있으며, 공급량은 국가에 따라서는 증감은 있지만 대체로 확대경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인구의 약 8할을 점유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1991년에서 1993년간 연간 1인당 어패류 평균 공급량은 1988년에서 1990년간의 평균치에 비하여 약 10% 증가한 10.3Kg이었다. 특히 중국이 32%나 증가하여 12.4Kg으로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은 역으로 14% 감소하여 22.3Kg으로 되었다. 이 때문에 세계 전체로는 2% 감소하여 13.0Kg으로 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1인당 어패류 공급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식용 수산물 공급량의 감소(12% 감소)를 들 수 있다.¹⁵⁾

한편 수산업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실태에 상응한 어업생산이 전제로 되고 있으나, 현재 해면어업의 경우 자원평가 결과가 이루어져 있는 어획대상어종의 7할은 허용범위의 상한에 도달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미이용자원의 대규모 개발이 없는 한, 앞으로의 세계어업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15) 農林統計協會, 「平成8年度 圖說 漁業白書」(1997), pp.104-108 를 참조.

제 2 절 水産物 需給現況과 輸入動向

1. 水産物の 需給現況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규모는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욕구에 따라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수산물의 생산은 자연조건의 변화, 즉 해양여건에 따른 변동과 어기에 따른 계절성으로 생산량의 추정과 계획생산이 곤란하다. 이와 같은 생산의 불확실성과 계절성으로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표 2-11>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요·공급¹⁶⁾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수산물 수급동향에서 나타나는 연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1960년대는 자급시기였으며, 1970년대는 원양어업의 활발한 해외어장 진출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을 시도한 시기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제한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세계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수산물시장도 새로운 여건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총규모면에서 보면 1995년 4,756천톤은 30년전인 1965년 637천톤에 비교면 약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전인 1980년에 비교하면 약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소비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총 규모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각각 6.0배,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면에서 보면 1965년 103천톤이 1995년 1,170천

16) 수산물의 수급(수요와 공급)은 「국내소비와 수출」 (=수요), 그리고 「국내생산과 수입」 (=공급)간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성립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양자간의 차이는 재고량의 증감에 의하여 조정된다.

톤으로 약1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총수요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24.6%(1995년)에서 최고 27.6%(1980년)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 총공급에 대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9%에서 1995년 19.9%, 1996년 25.0%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1> 수산물의 수요·공급 추이

(단위:천M/T)

연도 구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65/'95	'80/'95
수 요	국내소비	534	776	1,562	1,746	2,318	2,583	3,215	3,202	6.0배	1.8 배
	수 출	103	159	573	696	867	1,058	1,170	1,191	11.4	1.7
	이 월	-	-	-	77	94	290	371	427	-	5.5
	수출/총 수요·%	-	-	-	27.6	26.4	26.9	24.6	24.7	-	-
계		637	935	2,135	2,519	3,279	3,931	4,756	4,820	7.5	1.9
공 급	국내생산	637	935	2,135	2,410	3,103	3,275	3,348	3,244	5.3배	1.4 배
	수 입	-	-	-	41	91	380	948	1,205	-	23.1
	재 고	-	-	-	68	85	276	460	371	-	6.8
	수입/총 공급·%				1.6	2.8	9.7	19.9	25.0	-	-

자 료 : 농림부, 「1997년도 농림업 주요통계」 (1997.6)

<표 2-12>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1965년 18.0kg, 1975년 29.9kg, 1985년 37.2kg, 1990년 36.3kg, 1995년 46.0kg으로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1995년의 46.0kg은 1965년의 소비량에 비교하면 약2.56배 증가한 수치이며, 1980년의 소비량에 비교하여도 약1.7배 증가한 것이다.

<표 2-12>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단위 : kg)

연도 구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65/ '95 (배)	'80/ '95 (배)
1인당 소비량	18.0	17.3	29.9	27.0	37.2	36.3	35.9	40.0	43.3	44.9	46.0	2.56	1.7

자 료 : 농촌경제연구원 「1990년도 식품수급표」, 「1995년도 식품수급표」를 참조

수산물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1965년 637천톤에 비하여 1995년은 3,348천톤으로 약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980년 2,519천톤에 1995년의 생산량을 비교하면 약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산물의 수입은 1970년 41천톤이었던 것이 1995년 948천톤으로 무려 23.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참조).

일반적으로 국민식량의 수급은 생산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형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농산물보다 동물성 식품의 공급량이 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축산물과 함께 수산물은 국민의 식량수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표 2-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인 1일당 수산물 공급량은 축산물의 강한 증가 추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증가율을 보이나, 1965년 48.7g에서 1980년 73.7g, 1995년 126g로 명백하게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과 함께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식품 총공급량에

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04%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표 2-13>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및 동물성단백질 공급량

(단위 : g)

구 분 \ 연 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95/'80 (배)
식품 공급량	전 체(a)	937.6	1002.6	1014.4	1166.0	1200.6	1338.0	1513.7	1.3
	수산물(b)	48.7	47.4	82.0	73.7	102.0	99.1	126.0	1.7
	농산물	862.3	918.8	883.9	1008.9	973.3	1065.8	1174.9	1.2
	축산물	26.6	36.4	48.5	83.4	125.3	173.3	212.8	2.6
	비율 (b/a)	5.2	4.7	8.1	6.3	8.5	7.4	8.3	-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전 체(c)	9.2	10.7	15.2	20.2	28.5	33.2	38.6	1.9
	수산물(d)	6.4	6.6	10.3	10.7	16.4	15.9	17.7	1.7
	축산물	2.8	4.1	4.9	9.5	12.1	17.3	20.9	2.2
	비율 (d/c)	69.6	61.7	67.8	53.0	57.5	47.9	45.9	-

자 료 : 농촌경제연구원 「1990년도 식품수급표」, 「1995년도 식품수급표」를 참조

17)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g)

구 분 \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식품 공급량	전 체(a)	1355.1	1406.9	1452.5	1434.2	1513.7
	수산물(b)	98.4	109.7	118.6	123.1	126.0
	농산물	1082.8	1107.8	1137.0	1116.7	1174.9
	축산물	173.9	189.4	196.9	194.4	212.8
	비율 (b/a)	7.3	7.8	8.2	8.6	8.3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1995년도 식품수급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에 있어서 수산물 공급량은 1965년 6.4g, 1975년 10.3g, 1985년 16.4g, 1995년 17.7g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데 축산물의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전체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에 있어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다.

다시 말하면 양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축산물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4> 수산물의 이용형태

(단위 : 천톤)

연 도 구 분	1981	1984	1987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어획량(a)	2,270	2,252	2,449	2,350	2,109	2,265	2,595	2,590	2,451
선어용	1,033	889	545	438	301	287	614	629	607
가공용(b)	1,237	1,363	1,904	1,912	1,808	1,978	1,981	1,961	1,844
비율 b/a	54.5	60.5	77.7	81.4	85.7	87.3	76.3	75.7	75.2

자료 : 수산청, 각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참조.

주 : 1)원양어획물은 제외한 수치임.

2)원료어를 기준으로 한 것임.

<표 2-14>는 수산물의 이용형태를 연도별로 표시한 것이다.

어획된 수산물은 중간 수요용인 가공용과 최종 소비용으로 이용되는 선어로 대별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선어용 이용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가공용 이용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가공용의 비율은 1992년 87.3%를 정점으로 하여 1995년 현재 75.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2년까지의 수산물 수급구조는 종래의 선어중심에서 가공중심으로 점차 변화해왔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1993년 이후에는 선어 중심의 이용비율이 12%대에서 24%대로 재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수산물 가격은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되고, 단기적으로는 선도와 당일 또는 며칠간의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가격은 생산원가와 판매까지의 비용,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관계, 유통기한 등을 기본으로 결정된다.

수산물은 수산물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 즉 생산의 국지성, 계절성 등의 변동성, 부패성 또는 변질성,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 등으로 말미암아, 반입한 당일에 모두 판매해야 하는 당일형 유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수산물의 가격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냉동냉장 보관기술이나 운송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지역 또는 시간적인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의 변동폭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매매되는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식료품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산물은 축산물과 결합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산물의 가격은 축산물의 수급동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¹⁸⁾

<표 2-15>는 1992년에서 1994년까지 수산물의 월별·종류별 가격변동을 표시한 것이다.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 수산물은 계절에 따라 가격증감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어종에 따라서도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변동폭이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결합관계에 있는 수산물과 축산물의 연도별 가격서열을 표시한 것임(일본의 사례).

그 중에서 어류의 가격은 가을(9, 10, 11월)에 높게 나타나며, 봄(3, 4월)에 가장 낮게 나타난다. 갑각류의 경우에는 가을과 겨울에 걸쳐 높게 나타나며, 여름(6, 7, 8월)에 낮다. 반면 해조류의 경우에는 봄(3, 4, 5월)에 낮게 나타나며, 그 이외의 계절에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산물의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첫째, 장기적 공급측면에서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생산의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가는 반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어획물을 직접 산지시장에서 소비하는 상대적 비율이 커지며 내륙지 소비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적어지고 있다.

둘째, 장기적 수요측면에서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어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지고 단백질의 충족을 수산물에서 구하게 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통수단 및 보관시설의 발달로 말미암아 시장이 지역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연도 가격	1970	1975	1980	1985	1988
고가(高價) ↑	쇠고기	쇠고기	쇠고기	쇠고기	광 어
	참 치	참 치	참 치	참 치	쇠고기
	방 어	방 어	광 어	광 어	참 치
	돼지고기	돔	돔	돔	돔
	염장연어	돼지고기	방 어	방 어	방 어
	돔	염장연어	염장연어	염장연어	염장연어
	닭고기	광 어	문 어	가다랭이	연 어
	가다랭이	가다랭이	가다랭이	문 어	가다랭이
	연 어	문 어	연 어	돼지고기	문 어
	광 어	닭고기	돼지고기	연 어	가자미
	문 어	연 어	전갱이	가자미	돼지고기
	꽂 치	오징어	가자미	오징어	전갱이
	가자미	가자미	닭고기	전갱이	오징어
	전갱이	전갱이	오징어	닭고기	닭고기
	오징어	꽂 치	대 구	대 구	꽂 치
	정어리	대 구	꽂 치	꽂 치	대 구
저가(低價) ↓	대 구	정어리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달 갈	달 갈	정어리	정어리	정어리
	고등어	고등어	달 갈	달 갈	달 갈

자료 : 多屋勝雄, 「國際化時代の水産物市場」(원자료 : 總務廳, 「家計調査年報」, 1988)에서 재인용.

<표 2-15> 수산물의 월별·종류별 가격변동 (1992-1995년평균)

(단위 : 원/kg)

종류별 월 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 타 수산동물	해조류
1	1,320	2,414	1,202	1,715	738
2	1,403	2,649	1,175	1,546	495
3	1,111	2,206	1,146	1,405	311
4	1,147	2,692	1,028	1,442	244
5	1,317	2,567	1,374	1,486	159
6	1,249	1,951	1,388	1,213	440
7	1,289	1,749	1,247	1,059	639
8	1,277	1,846	1,851	924	577
9	1,438	2,343	1,390	945	536
10	1,619	2,406	896	1,097	471
11	1,616	2,850	1,303	1,477	447
12	1,218	3,173	1,277	2,245	575
평 균	1,333	2,403	1,273	1,379	474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각년도), 참조.

한편 수산물가격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하여 생산이 많이 될 때 산지수협을 통하여 적정량을 수매하고 성수기에 소비자에게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비축사업의 주요 대상품목은 김, 건미역, 마른 멸치, 마른오징어 등 건어물과 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명태 등 대중어종이 주요 품목이다. 또한 정부의 수매비축사업과는 별도로 민간업체에 농안기금을 지원하여 수매비축토록 함으로써 민간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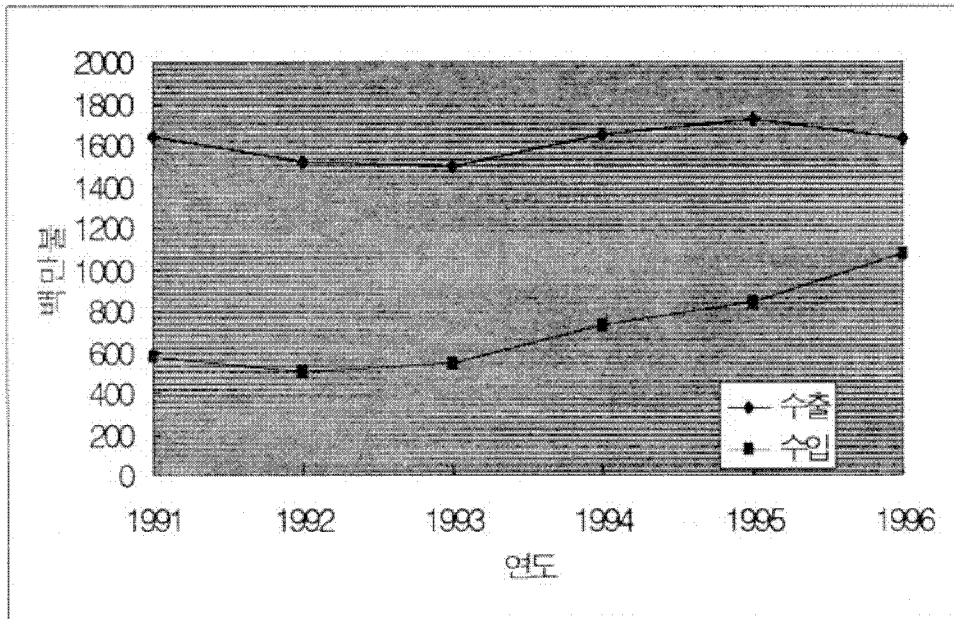
이상의 몇 가지 분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산물의 국내소비량은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¹⁹⁾ “소비성향 역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식생활 관습에 따라, 종래의 단순 선어, 부식개념에서 탈피하여 즉석, 편리, 고차가공품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식품의 고급화와 포장용기의 개선 및 패스트푸드의 체인공급확대, 제품의 다양화 등으로 서구식 소비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水産物의 輸入動向과 構造變化

1990년대 우리 나라의 수산물 교역상황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수산물 수출은 금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인구추이를 보면, 1965년 2,870만 5천명, 1980년 3,812만 4천명, 1995년 4,485만 1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는 통계청, 「한국통계연감」의 연앙추계인구를 사용함.

<그림 2-1>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상황



자 료 : <표 2-16>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특히 최근 3년동안 수산물 수출은 정체상태이나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가전체의 무역수지는 적자상태인 반면 수산물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축소경향을 보여주고 있다(<표 2-16> 참조).

<표 2-16>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연평균 증가율(%)
수출	국가전체	71,870	76,632	82,236	86,130	125,058	129,715	10.3
	수산물	1,643	1,518	1,497	1,647	1,722	1,635	- 0.1
	구성비(%)	2.3	2.0	1.8	1.7	1.4	1.3	
수입	국가전체	81,524	81,775	83,800	102,348	135,119	150,339	10.7
	수산물	576	506	542	726	843	1,080	11.0
	구성비(%)	0.7	0.6	0.6	0.7	0.6	0.7	
수지	국가전체	-9,654	-5,143	-1,564	-6,335	-10,061	-20,624	-13.4
	수산물	1,067	1,012	955	921	879	555	-10.3

자 료 :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각년도), 참조.

또한 국가전체의 수출금액에 있어서 수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금액 구성비는 1991년에 2.3%에서 1993년에 1.8%, 1996년에 1.3%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반하여, 수산물 수입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같은 기간(1991년~1996년)동안 0.6%~0.7%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금액면에서는 수입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6> 참조).

<표 2-17> 용도별 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용 도										
수 출 용 원 자 재		135	143	169	211	150	150	184	207	207
내 수 용	합작 및 공동사업	92	124	91	147	160	146	115	108	93
	기 타 내수용*	64 (22.0)	55 (17.1)	108 (29.3)	218 (37.8)	196 (38.7)	252 (46.5)	436 (60.1)	528 (62.6)	780 (72.2)
	소 계	156 (53.6)	179 (55.6)	199 (54.1)	365 (63.4)	356 (70.4)	398 (73.4)	551 (75.9)	636 (75.4)	873 (80.8)
합 계		291	322	368	576	506	542	726	843	1,080

자 료 :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각년도), 참조.

주 : * 관광용 식자재 포함한 수치임.

() 안의 수치는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수산물 수입의 용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2-1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산물 수입자유화와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또 국내생산(특히,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 생산의 부진)의 정체로 인하여 내수용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급격히 증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총수입에서 해외와의 공동어업사업과 합작에 의한 어획물을 제외한 기타 내수용 수입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17.1%, 1990년 29.3%에 불과했던 것이 1994년에는 60%를 넘었으며, 1996년에는 무려 72.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천 달러)

품목별	1993 (A)	1994	1995	1996 (B)	B/A (배)
명란(냉동)	61,529	106,109	108,785	120,284	1.96
새우(냉동)	8,290	35,260	46,591	71,706	8.65
명태연육(냉동)	49,422	44,472	54,287	62,585	1.31
조미오징어(냉동)	-	2,560	15,894	47,296	18.48
낙지(냉동)	-	23,851	15,748	44,848	1.88
대구(냉동)	33,363	21,103	29,732	43,787	1.31
명태(냉동)	11,601	11,619	12,419	31,701	2.73
오징어(냉동)	42,441	46,708	31,965	28,078	0.66
굴뱅이(냉동)	-	7,069	15,451	26,729	3.78
아귀(신냉)	6,234	20,612	24,302	21,408	3.43
해파리(염장)	18,027	17,760	15,933	20,197	1.12
임연수어(냉동)	15,305	12,921	9,218	19,315	1.26
피조개(냉동)	14,104	17,942	22,887	17,105	1.21
조기(냉동)	6,190	4,898	4,435	16,323	2.64
농어(활어)	15,085	7,663	9,586	15,751	1.04
블락(냉동)	34,720	15,700	19,989	15,461	0.45
문어(냉동)	1,802	7,611	6,992	13,056	7.25
돔(활어)	4,649	9,400	8,061	11,487	2.47
복어(냉동)	796	6,897	7,634	10,152	12.75
미꾸라지(활어)	1,242	2,039	3,961	4,463	3.59
계	542,489	726,267	842,808	1,080,456	1.99

자 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입 실적」(각년도), 참조.

공동어업사업과 합작에 의한 어획물을 포함시켜 전체 내수용 수입 수산물의 비중을 보면, 1992년에 이미 70%를 상회하였으며 1996년에는 80.8%라는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수입의 급증은 내수용 수산물 수입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품목별 수산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표 2-1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요 수입수산물중 대부분의 품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기는 1997년 7월 개방품목으로 합작사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며, 더욱이 국내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에 따라 1996년에는 전년대비 약368%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외에도 수입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품목은 내수용 대중어인 새우, 낙지, 아귀, 문어 등으로 국내 동종 수산물과의 국내시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물수입 동향을 보면, 1997년도 1/4분기 수산물 수입액은 237백만 달러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5%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가격차가 큰 어종으로 새우(46%), 문어(130%), 홍어(166%), 갈치(349%)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냉아귀(-22%), 꼴뱅이(-10%), 염장해파리(-26%), 복어(-48%), 대구(-30%) 등의 수입은 감소하였다.

품목별 수입 동향을 보면 활선어 수입이 다소 감소한 반면, 냉동품, 통조림, 원양어류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활선어는 횡감용 활어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선어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냉동품은 새우, 명란, 꽂치, 갈치 등의 수입증가와 문어, 낙지 등의 단가상승으로 물량은 6.3%, 금액은 22% 증가하였다. 염장품의 경우에는 새우젓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의 하락으

20)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활돔 : ('96.3) 1,756천 달러 → ('97.3) 2,869천 달러 (63% 증가), 활농어 : ('96.3) 3,728천 달러 → ('97.3) 4,098천달러 (63% 증가), * 중국산 점유율 : ('96.3) 28% → ('97.3) 49%, 바닷가재 : ('96.3) 2,126천 달러 → ('97.3) 3,020천 달러 (49%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로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아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수용인 고급 수산물의 수입증가와 함께 수입개방 품목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식품 소비성향의 고급화로 인한 새우, 바닷가재, 활돔 등 고급어종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89년 10월 GATT BOP조항 졸업 이후 국제수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92년부터 2차에 걸쳐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물 전품목을 연차적으로 개방해 왔다.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국내생산이 적은 품목·비기호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개방해 왔는데, 현재까지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긴 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 수산업에 큰 영향은 없었다.

수입급증으로 국내 동종산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부과 및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등을 통하여 수입관리를 실행하여 왔는데, 1988년 7월 20일 이후 산업피해구제제도에 의해 수입이 전면 제한되었던 새우젓이 1996년말 구제기간이 종료되어 조정관세 100%를 적용하였으나 1997년 1/4분기 수입이 이미 100만불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관세적용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정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즉, 조정관세(관세법 '제 12조의 2'의 규정) 적용품목은 1992년 3개, 1993년 6개, 1994년 11개, 1995년 14개, 1996년 20개, 1997년 26개 품목으로 1997년 6월 현재 총 26개 품목이며, 조정세율은 14~100%까지 부과하고 있다.

<표 2-19> 조정관세 적용품목의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품 목	관세율 (%)			1996년 ¼분기	1997년 ¼분기	전년대비 증가율 (%)	주수입국
	기본 관세	양허 관세	조정 관세				
돔(활)	10		100	1,756	2,869	163.4	일본
농어(활)	10		100	3,728	4,098	109.9	일본, 중국
미꾸라지(활)	10		100	592	734	124.0	중국
노래미(활)	10		30	64	101	157.8	중국
명태(냉동)	10		30	8,456	5,138	60.8	러시아, 미국
복어(냉동)	10		40	4,019	1,360	166.9	중국
옥돔(냉동)	10	14	14	145	315	217.2	중국, 일본
기타돔(냉동)	10	14	14	670	1,045	156.0	뉴질랜드, 모리타니
명란(냉동)	10		14	22,664	27,842	122.8	러시아, 일본
명태패래트(냉동)	10		30	767	1,633	212.9	중국
새우(냉동)	20		40	12,295	17,997	146.4	태국, 필리핀
낙지(냉동)	20		50	5,582	7,391	132.4	중국
미역(건조)	20	24	24	64	17	26.6	중국
미역(염장)	20	24	24	55	262	476.4	중국
미역(기타)	20	24	24	-	-	-	
골뱅이(통조림)	20		50	-	-	-	
골뱅이(훈제)	20		50	-	49	-	칠레
골뱅이(조제)	20		50	5,623	5,031	89.5	영국, 아일랜드
조미오징어	20		30	7,221	9,691	134.2	멕시코
새우젓	20		100	-	1,014	-	중국
홍어(냉동)	10		50	1,532	4,075	266.0	칠레, 아르헨티나
오징어(냉동)	10		30	1,047	1,164	111.2	뉴질랜드, 중국
다랭이(통조림 등 4개 품목)	20	44	40	-	-	-	
계 (26개 품목)				33,336	92,566	121.3	

자 료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그리고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수입실적이 전혀 없거나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은 35%인 9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9> 참조).

第 3 章 輸入水産物の 流通實態

제 1 절 輸入水産物の 流通經路 및 流通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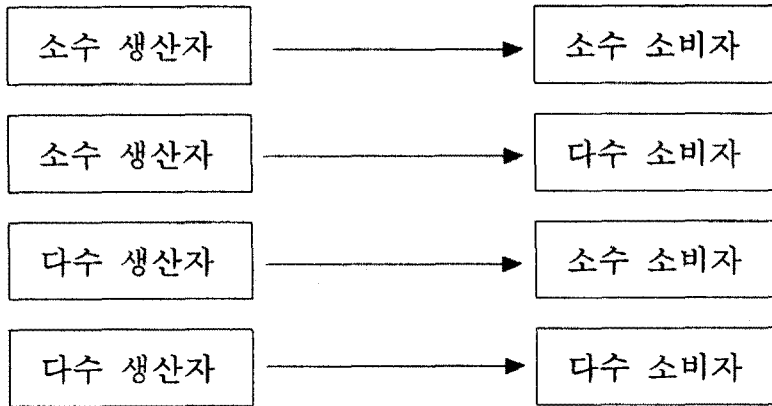
1. 輸入水産物の 流通經路 分析

가. 수산상품의 일반적인 유통경로

유통경로란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그 소유권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담당하는 제기관의 결합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통경로는 생산자의 생산행위로부터 최종소비자의 이용이라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의 유통을 생산과 소비과정의 주체를 중심으로 파악할 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수의 생산자로부터 소수의 소비자로 흐르는 유형, 둘째, 소수의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로 흐르는 유형, 셋째,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소수의 소비자로 흐르는 유형, 넷째,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로 흐르는 유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상품의 일반적 유통경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은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유형과 네 번째 유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한 수집, 반출, 분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많은 유통경로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근해 수산물과 원양 수산물의 유통경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경로와 수협공판장을 통한 유통경로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7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수산물 자유판매제도에 따라 수산물 유통경로의 다양성은 현재로서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복잡성을 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수산물의 대부분이 유통되고 있는 유통기관을 살펴보면 수집작용과 출하작용은 생산지의 출하단체인 수협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지에 분산시키기 위한 중계역할은 중계시장(central markets)이 수행한다. 현재 한국에서 중계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

태로서는 도매시장, 수협공판장, 유사도매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중계시장은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대규모 도시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화의 물적 유통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가격형성이나 거래를 취재하는데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계시장에서부터 분산하는 과정이 시작되며 수산물의 분할출하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지 수협공판장에서 중계시장을 통하는 유통경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산지수협의 판매사업의 방법에는 수협이 조합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위탁판매와 조합원으로부터 구매하여 조합자체의 책임으로서 자유로이 판매하는 매상판매의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산지 수협에서는 주로 위탁판매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격결정은 중매인의 경쟁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산지수협의 경매에 참가하는 중매인은 수집상이나 유사도매시장의 도매상의 주문에 의하여 경매에 참가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수산물을 주문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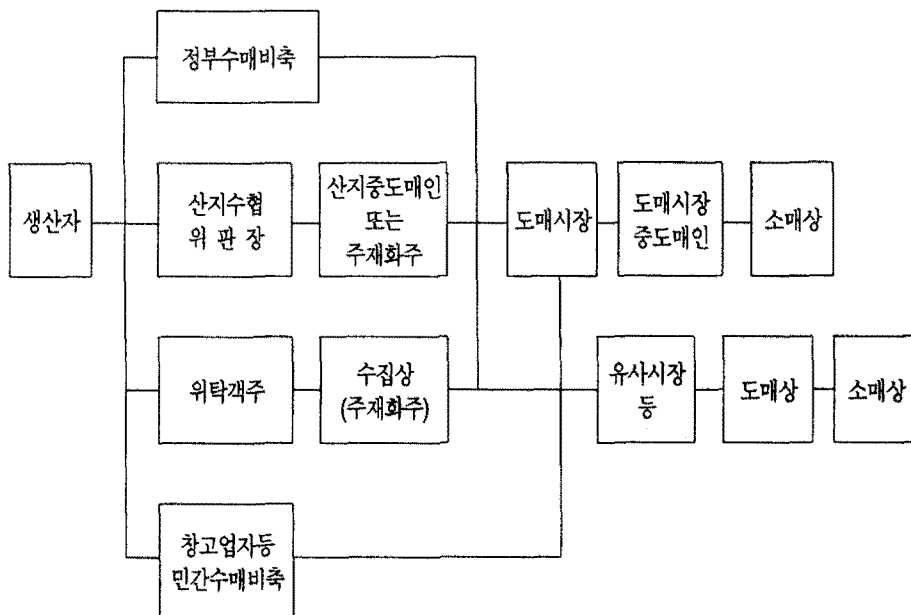
산지의 중매인 또는 수집상이 구입한 수산물은 소비지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중도매인에 판매위탁하는 경우와 유사도매시장의 도매상에 판매하는 경로 등이 있다. 산지의 중매인과 수집상인은 소비지의 도매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개별적 판매형식에 의해 전매한다. 그리고 수집상과 도매상은 단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유형은 매매방식도 사실상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판매와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내륙지 도매시장이나 수협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유사도매시장을 개입시켜 이용하는 이유는 매매가 신속하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소비도시의 수협공판장이라 함은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산지 위판장과 소비지의 공판장을 직결시켜 유통경로를 계열화시킴으로써 어가안정과 수급조절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지 수협공판장에서 경

매방법에 의하여 중매인에게 판매된 수산물이 소비지 수협공판장에 상장 되어 중매인에게 경매되고 경락된 수산물은 직매장, 슈퍼마켓, 소매상에게 판매된다. 그리고 생산어민이 내륙지 공판장에 직출하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산지수협이 구매하여 직매장에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경로도 있다.

그런데 수산물 유통경로는 이상과 같은 유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본 수산물 유통경로외에도, 어업별(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또는 품목(선어류, 활어, 패류 등)의 종류에 따라 유통경로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림 3-2> 연근해수산물 유통경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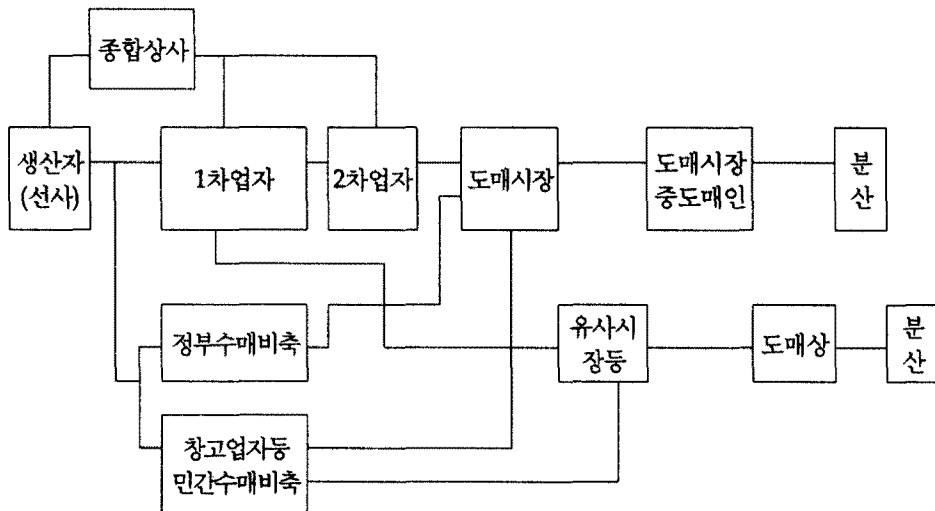


먼저 어업별 유통경로를 연근해 수산물 유통과 원양 수산물 유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수산물 유통량의 약 52%를 차지하는 연근해 수산물의 유통경로는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자로부터 대부분의 경우(약 65%) 산지수협위원장을 통하여 산지중도매인 → 도매시장 → 중도매인 → 소매상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위탁객주 등을 통하여 유사시장 → 도매상 → 소매상으로 분산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국내 유통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원양수산물(냉동물)의 유통경로는 <그림 3-3>과 같이, 생산자(원양업자) → 1차·2차 중개업자를 통하여 도매시장·도매시장 중도매인을 통하여 소매상으로 분산되는 유통경로, 유사시장등을 통하여 도매상 → 소매상으로 분산되는 경로 등 다양한 경로가 있다. 그리고 원양어획물의 국내유통량중 약10% 정도가 도매시장을 통하여 출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자료: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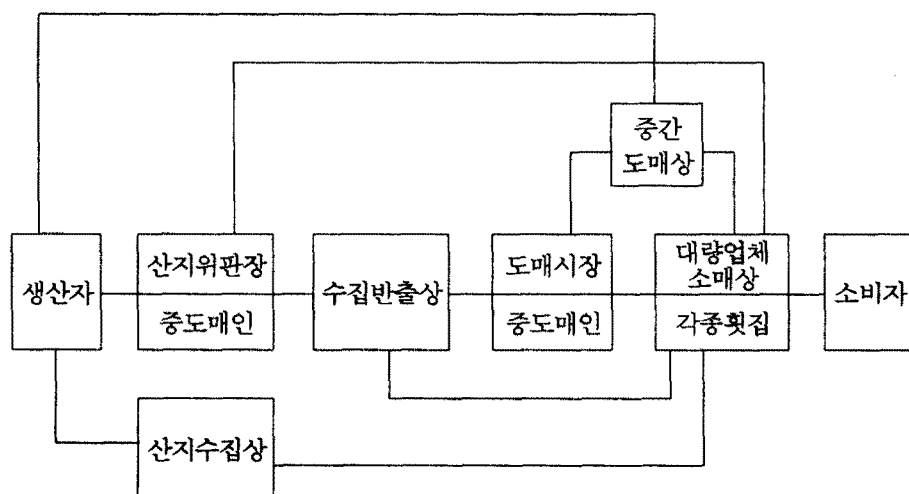
<그림 3-3> 원양수산물(냉동) 유통경로도



도매시장 → 중간도매상 →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로, 생산자 → 산지수집상 → 유사도매시장 →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로,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소비지도매시장 → 중간도매상 →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로 등 복잡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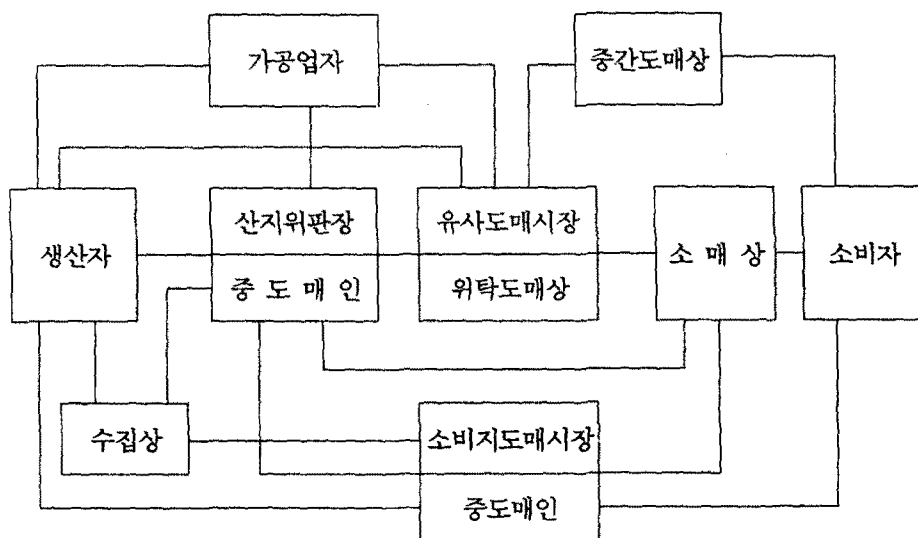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고급화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활어류를 들 수 있다. 활어류는 산지수집상이 산지의 해상이나 육상에 활어 축양시설 등을 설치해두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산지의 활어 위판장이거나 소비지 도매시장 또는 소비지의 소매상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산지위판장의 활어 판매시설이 점차 확충되고 공개경매에 의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생산자가 직접 산지위판장에 위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고급횃집이나 대형횃집 등은 생산자로부터 또는 산지수집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림 3-5> 활어의 유통경로도



할어의 유통경로를 세분하면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자 → 산지위판장 → 반출상 → 소비지 도매시장 → (대형)소매상이나 각종 횃집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로, 생산자 → 산지수집상 → (대형)소매상이나 각종 횃집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로, 생산자로부터 중간 도매상을 경유하여 (대형)소매상이나 각종 횃집 등으로 유통되는 경로, 생산자 → 산지위판장에서 반출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지 도매시장 → (대형)소매상이나 각종 횃집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 패류의 유통경로도



패류의 유통에 대해서는 대량양식 등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다품종, 대량생산 추세에 따라 도매시장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도매시장으로의 물량유입 자체가 산지중매인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

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형식적인 상장과 수의계약 매대로 각 중매인들은 자기가 확보한 물량은 자기가 처리한다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관행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통관행 뿐만 아니라 소량다품종의 불균일한 패류의 상품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의 정착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패류의 유통경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자로부터 산지위판장을 경유(약48%)하여, 소비지 도매시장 → 소매상 → 소비자로 유통되는 경우, 또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소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또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유사도매시장(위탁상) →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우, 생산자 → 산지의 수집상으로부터 산지위판장 또는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 등의 유통경로도 찾아 볼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세 생산자의 경우 산지수집상에게 위탁하여 출하하던 시스템이 어촌계 공동위판장으로 출하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나.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

이상에서 고찰한 국내산 수산물의 유통경로와 마찬가지로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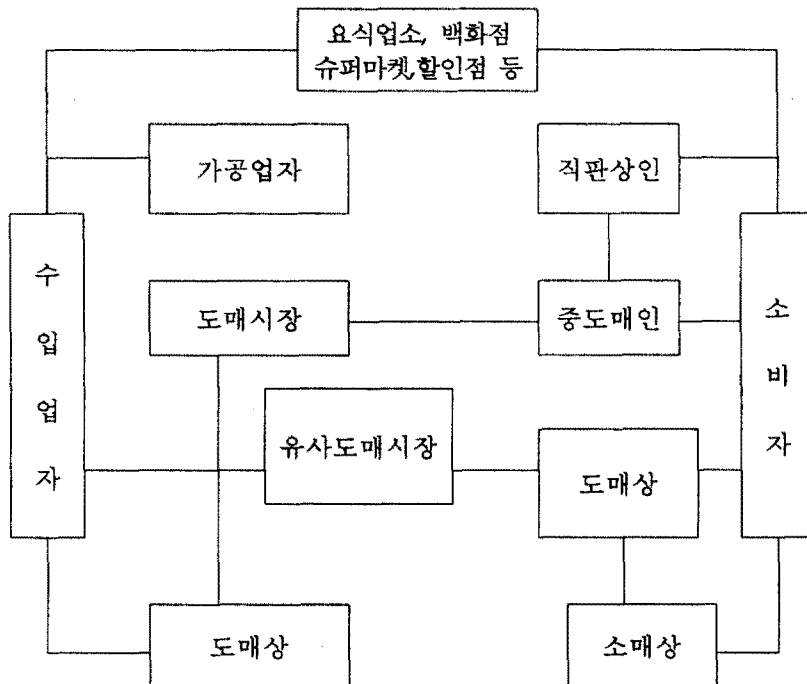
국내 수산물 유통량중 약 33%를 차지하는 수입수산물은 약 4%만이 도매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3-1> 참조). 도매시장을 통하는 수입수산물도 중도매인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경우와 중도매인으로부터 직판상인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경우 등으로 추적되고 있다.

<표 3-1> 수입수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

(단위 : 톤, 천 달러)

구 분	'96 수입수산물	'96 도매시장 거래실적		도매시장 점유율	비고
		국내수산물 (원양포함)	수입수산물		
물 량	526,635	341,128	21,438	4.0%	
금 액	1,080,456	726,853	91,940	-	

<그림 3-7>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도



그 나머지는 수입업자 → 유사도매시장 → 도매상을 통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경우, 수입업자 → 유사도매시장 → 도매상 → 소매상을 통하여 분산되는 경우, 또 수입업자로부터 요식업소,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분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외에도 가공업자를 통하여 처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통경로가 현실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그림 3-7> 참조).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단계에 있어서 첫째, 대량의 물량은 현실적으로 종합상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소량의 물량은 전문수입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또 다수의 도·소매업자들이 수입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단계에서의 수입경로는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수산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마구잡이 식으로 수입하여 총괄적으로 보면 중복수입이나 과잉수입 등으로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셋째, 수입단계에서 수산물 비전문업체의 난립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수입업자들의 행동은 국제무역 관행이나 기본질서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넷째, 수입원산국에서의 국내 수입업자간의 과당경쟁에 의해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수입수산물의 증가 및 무분별한 수입에 의하여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도매유통단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수입냉동물(포장 일식재료 포함)²¹⁾의 경우, 도매시장내 중도매인이 수입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필요품목을 수입의뢰하여 시장으로 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도매인은 타인명의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고 도매시장법인은 수입국별, 품목별, 등급별로 작성된 가격조건표를 기준으

21) 수입냉동물에는 고등어, 갈치, 꽂치, 동태, 대구, 방어, 참치류, 임연수어, 삼치, 조기류, 홍어, 가자미, 돔류, 민어, 연어, 적어, 가오리, 꽃게, 새우류, 오징어, 낙지, 문어, 기타 냉동 일식재료 등이 포함된다.

로 해당되는 금액만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대중적 냉동물은 중판을 통하여 분산하고 포장 일식재료 등은 중도매인이 외부 도·소매상, 일식집,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 외에도 냉동물 중 일부 비허가상인(일명 “대판”)이 수집·수탁한 물량은 수집상 명의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고 중도매인 명의(허가권 대여)로 물량을 인수(수의매매)하여 판매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래에서는 중도매인에게 명의 대여 댓가로 거래금액의 1~2%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도매유통단계에서의 수산물 유통의 특징이라는 측면에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량 및 가격면에서 보면 대량의 물량을 수입하는 종합상사에 의하여 조절(또는 지배)되고 있다. 둘째, 수입업자가 유사도매시장이나 신유통업체 등에게 분산하고 잔품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형태로 인하여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다. 셋째, 신용에 의한 거래질서 보다는 관행에 의한 연고판매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넷째, 일부품목의 경우에는 국내의 주요산지에서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등 수입관리상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소매유통단계에 있어서도 도매단계에서와 대동소이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소매점포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수입수산물 유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매단계의 종사자들에게 홍보 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국내산 수산물 유통경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산지수협의 위판장 또는 산지수집장을 통하여 소비지의 도매시장이나 수협공판장 또는 유사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소매상에 분산되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집기관, 중계기관, 분산기관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산물은 일반상품에 비하여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유통과정을 거침으로써

유통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통경로가 복잡함으로써 동일한 수산물이 동일장소에서 동일인에 의해 최초단계에서 출발하였으나 하부 유통경로에 갈수록 분산 유통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는 ①가격이 유통경로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②수산물 취급에 필요한 시설이 하부구조로 갈수록 미비하고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산물 고유의 상품가치, 즉 선도가 다르다. 따라서 동일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유통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욕구충족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③가격과 상품가치는 일반적으로 일치함이 원칙이나 수산물의 경우 복잡다단한 유통경로로 인해 경로마다 서로 일치하지 않음은 물론 동일한 경로라 하더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대로 종래의 수산물 유통과정은 어획 생산에서 식품소비에 이르기까지를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산지유통단계의 산지시장과 소비지유통단계의 소비지시장이라는 두 시장을 경유하는 것이 전형적인 유통경로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수산자원의 감소 및 수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수산물 산지시장의 지위가 저하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의 증대는 기존의 수산물 유통경로를 무시한 새로운 유통경로의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자유판매제도의 도입·시행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경로형성의 동인(動因)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낳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²²⁾

22)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수산물 유통경로상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내 산지시장은 경유하지만 소비지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유통경로
- (2) 국내 산지시장은 경유하지 않고, 소비지시장을 경유하는 유통경로
- (3) 국내 산지시장 및 소비지시장 양쪽 모두 경유하지 않는 유통경로

이 가운데 수입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의 증가로 (2)와 (3)의 유통경로가 양적, 질적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일본의 산지시장이 취급하는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산지시장의 경영악화 및 매수인 세력의 지위저하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산지시장에

2. 輸入水産物の 流通마진 分析

가. 國內産 水産物の 流通마진 體系

상품의 유통마진은 상품별 특성이나 유통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생산지점과 소비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생산지점과 소비지점에 따라, 또는 유통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통마진을 통일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대상상품의 비용발생 요소의 측정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유통량이 가장 많은 경로를 통해 가장 보편적인 품질의 상품이 주산지에서 주소비지로 이동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시장화 되는 시기에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제한적이겠지만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표 3-2>와 <표 3-3>에서의 총마진은 소비자 지출가격에서 생산자 위판가격을 뺀 금액을 말하며, 동시에 유통비용과 실마진을 합한 금액과 동일하다.

서 형성되는 제 1차가격이 전체 수산물 가격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산지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산물 가격은 국내 산지시장을 점유하지 않고 유통되는 물량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양판점·슈퍼마켓·생협·유력전문체인 등이 집중·계획 구매하는 수입수산물이나 양식수산물의 가격결정이 산지시장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2> 국내산 수산물의 유통마진

(단위 : 원)

구 분	생산자 위판가격	소비자 지출가격	유통마진		
			총마진	유통비용	실마진
고등어 (30마리/상자)	2,874	10,050	7,176 100%	1,651 23.0%	5,525 77.0%
갈 치 (55마리/상자)	35,938	81,600	45,652 100%	2,013 4.4%	43,639 95.6
오징어 (25마리/상자)	11,174	24,000	13,726 100%	1,415 10.3%	12,311 89.7%

자료 : 강연실, 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1994), p.100 를 참조하여 재작성한 것임.

두 개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소비자의 지출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역으로 본다면 소비자의 지출가격은 생산자의 수취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등어의 경우 소비자 지출가격은 생산자 위판가격의 약 3.5배에 달하며, 갈치의 경우에는 2.3배, 오징어의 경우에는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통단계별 마진율을 살펴보면, 고등어의 경우 생산자 수취가격은 소비자 지불가격의 28.6% 밖에 되지 않아 유통마진이 71.4%에 달하고 있으며 유통단계별 마진은 소매상이 가장 높아 50.3%나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산자가 수취한 가격보다 유통과정에 개입한 소매상이 2배정도의 유통마진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경로별 유통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지

만, 총비용에 대한 비율이 16.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소매상의 마진율은 매우 높은 것이다.²³⁾

<표 3-3> 국내산 고등어의 유통단계별 마진율

구 분	가 격(원/상자)	마 진 율(%)
생 산 자	2,874	28.6
산지 위판장	3,050	1.7
중 도 매 인	3,800	7.5
소비지도매시장	4,000	2.0
중 도 매 인	4,200	2.0
중판(도매상)	5,000	7.9
소 매 상	10,050	50.3
총 마 진	7,176	71.4
유통 비 용	1,651	16.4
실 마 진	5,525	55.0

자료 : 앞의 자료, p.101 를 참조.

23) <표 3-3>에서 나타난 소비지 시장 중매인의 마진율 2%는 형식상장시 중매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인 경매가격 5%를 고려하면 과소계산된 것으로 판단되나 형식상장을 정규거래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제외하여 계산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국내산 수산물 유통마진을 비용발생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산지도매가격①

= 생산자 수취가격 + 상장수수료 + 양육노임 + 기타노임

○ 소비지 도매시장 도매가격②

= ① + 산지중매인 중개수수료 + 포장노임 + 상차비용
+ 차량운송비 + 하차비용 + 소비지중매인 위탁수수료
+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 기타이윤

○ 중간판매 시장가격③

= ② + 상차료 + 운임 + 이윤 + 기타

○ 소매상가격

= ③ + 운임 + 이윤 + 기타

이상의 유통비용 요소 중 산지 위판후 어획물을 냉동, 냉장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결, 보관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마진 및 비용은 증대된다.

위의 분석에서도 나타났지만 수산물의 유통마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통마진중 유통비용을 뺀 상인소득의 비중이 크다. 이것은 중간이윤이 높다는 것과 상통하며, 중간이윤이 높은 것은 개별상인이 과도한 이윤을 취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단계의 유통에 따른 다수상인의 개재를 들 수 있다.

둘째, 소매단계의 마진이 크다는 점이다. 수산물 소매상은 대부분 소규모 생산형태로서 상적기능 이상의 이윤을 추구하므로 마진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소매상의 영세성은 이윤취득 외에도 선별작업비, 재포장비, 감모 등의 비용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감모 및 손실발생의 문제이다. 수산물의 부패, 변질성은 다단계의 유통과정에서 감량 및 질적인 손실을 초래하며 따라서 이를 어

는 유통단계에서 최소화시키느냐에 따라 중간이윤내지 유통마진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넓은 유통시설과 수송시설 등은 감모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며 또한 생산지 출하단계에서 선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출하됨에 따라 유통단계에서 많은 감모가 발생하기도 한다.

넷째, 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한 가격의 연중 진폭이 큰 점과 상품취급상의 위험부담, 선대자금에 대한 자금비용 등도 중간이윤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단위물량당 유통마진의 고정화 경향이다. 수산물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수수료 및 하역비 등의 제요율은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일정율로 책정되거나 매년 물가지수의 상승과 연동하여 요율이 인상되는 경향이 있어 수산물이 홍수출하되는, 소위, 바닥시세 때에도 유통마진은 커지는 소지가 존재한다.

여섯째, 거래단위의 혼란에 따른 중량마진의 발생여지가 존재한다. 즉 실거래 단위와 계측단위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유통마진을 생각할 때 거래단위의 혼란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나. 輸入水産物의 流通마진 體系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입수산물 유통은 유통경로분석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대량의 물량은 종합상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소량의 물량은 전문수입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도매유통단계에서의 수산물 유통측면에서 그 특징을 지적인 바와 같이, 수입수산물 시장은 공급량이나 가격면에서 종합상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또 수입업자가 유사도매시장이나 신유통업체 등에게 분산하고 나머지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곤란한 것이다. 또 수입

수산물의 거래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관행에 의한 연고판매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일부품목의 경우에는 국내의 주요산지에서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등 수입관리상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표 3-4> 수입수산물의 유통마진 추정(97. 11. 현재)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입가격	마진율 (%)	도매가격	마진율 (%)	소매가격	원산지
냉 태	8통	9,000	22.2%	11,000	27.3%	14,000	미 국
"	6통	19,000	15.9%	22,000	18.2%	26,000	"
"	5통	20,000	20%	24,000	25%	30,000	"
임연수어	L	14,000	21.4%	17,000	-	-	"
"	M	12,500	12%	14,000	-	-	"
"	30Kg	26,000	15.4%	30,000	10%	33,000	러시아
대 구	10-12 (마리)	18,000	33.3%	24,000	-	-	"
"	7-9 (마리)	24,000	16.7%	28,000	-	-	"
"	4-5 (마리)	26,000	15.4%	30,000	-	-	"
"	5-7 (마리)	24,000	16.7%	28,000	-	-	"
낙 지	1Kg	33,600	13.1%	38,000	-	-	중 국
문 어	1Kg	2,300	8.7%	2,500	80%	4,500	"
복 어	(300 - 500g)	4,500	11.1%	5,000	40%	7,000	"
"	(500 - 700g)	6,500	7.7%	7,000	21.4%	8,500	"

더욱이 소매유통단계에 있어서도 도매단계에서와 대동소이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 국내수산물과의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표 3-4>는 수입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가격과 마진율을 추정한 것이다. 미국산 냉태의 경우, 수입가격 9,000원/8통 짜리가 소매단계에서 14,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약 49.5%의 유통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수입가격 19,000원/6통 짜리는 소매단계에서 26,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약 34.1%의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산 문어의 경우, 수입가격 1Kg당 2,300원 짜리가 도매단계에서 2,500원, 소매단계에서 4,500원으로 무려 88.7%의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매로부터 소매로의 단계에서 약 80%의 유통마진이 발생한다. 또 중국산의 복어의 경우에도 상기의 문어보다는 유통마진의 발생율이 낮지만, 51.1%의 총마진 중 40%의 유통마진이 도매로부터 소매로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미국산과 비교할 때, 중국산의 경우 도매단계에서 소매단계에 보다 많은 유통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입 원산지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수입산 가격을 국내산 가격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 2 절 輸入水産物の 流通情報體系

1. 水産物 流通情報體系의 概要

우리나라는 1976년 11월 유통정보센터 설치와 1982년 8월에 유통정보상황실 설치 등을 계기로 하여 지속적으로 유통정보체계를 구축·개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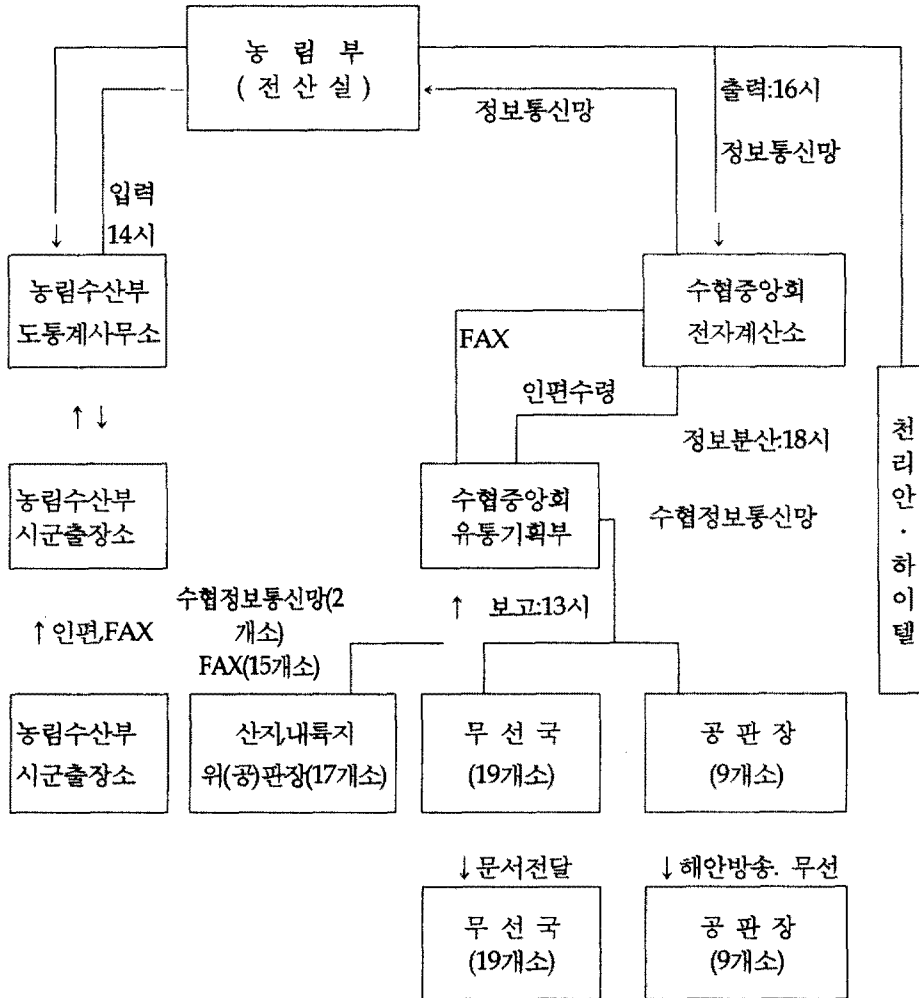
물적유통에 있어서 상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유통정보는 자유경쟁 시장구조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라는 것이다.

상품의 흐름의 방향과 속도를 주는 것이 바로 시장정보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정보는 상품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유통정보는 시장의 경쟁성을 결정하고 공정거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가 시기적, 장소적으로 제약되어 있거나 일부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있을 때에는 가격형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정보체계의 확립은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유통정보의 중요성에 비하여 수산물의 유통정보는 정확, 신속하고 광범위한 시장정보체계가 미흡하여 시장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의 유통정보는 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소비자, 중도매인, 소매업자 등의 능동적인 유통과정 참여자들에게 보다 정확·신속하고 유리한 거래조건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제공되는 의사결정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8> 수산물 유통정보의 흐름



자료 : 수협중앙회 유통기획부, 1995.

현재 (농림부) 및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유통정보의 적시제공으로 적절한 수급조절을 기하고 가격안정 및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유통과정 참가자들의 거래의사결정 참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유통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정보의 흐름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8>와 같다.

시장정보의 수집단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수협중앙회 유통정보센터에서 전국의 공(위)판장을 통하여 전화, 전용전신(T.T), 전산입력 등을 이용하여 위판 당일 13시까지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27개 어종을 대상으로 어종, 등급, 가격(Kg당 단가) 및 물량 등을 매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수집방법을 보면 각 위판장 및 수협도지부에 시장조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매일 조사결과를 유통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선보고와 서면보고를 병용하고 있다.

<표 3-5> 수산물 유통정보의 분산

- 무 선 전 파 : 계통조직 무선시설
(대상 : 조업어선, 위판장 및 어민)
- 간행물발간 : 월간 “수산물 유통정보” 매월 400부 배포
(계통조직 및 유관기업체)
- 매스컴 분산 : KBS 제1라디오, KBS 제1 TV, 한국수산신보,
농수축산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어민신문,
수산경제신문 등의 매체

<표 3-6> 수산유통정보시설

무선국	데이터통신	전산터미널	자동응답 전화기	FAX
36개소	20개소	1개소	5개소(14회선)	14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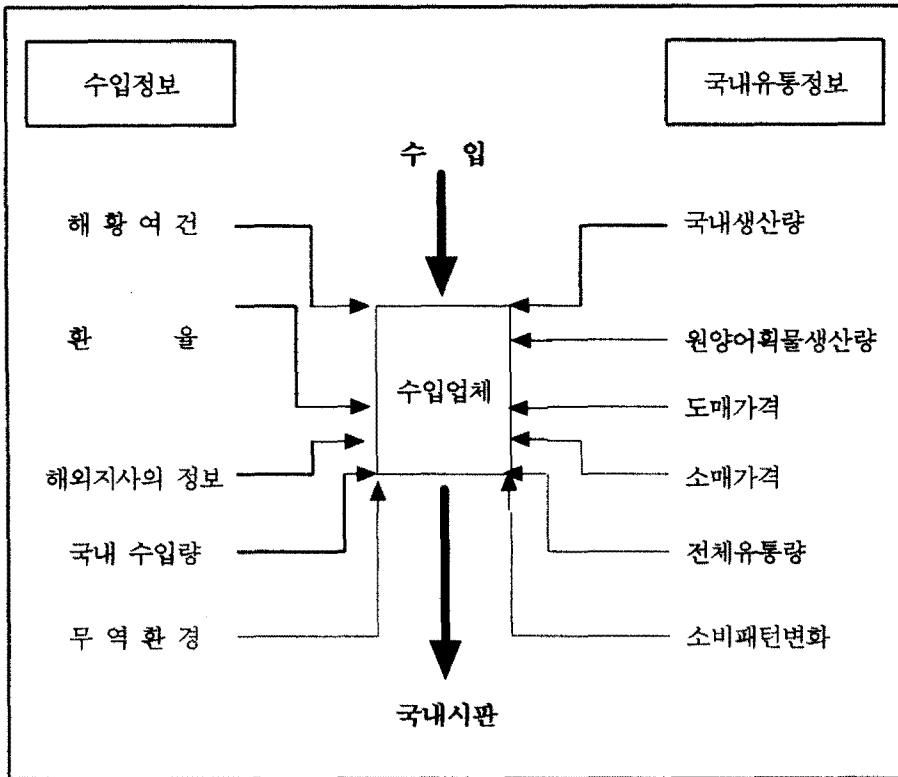
한편, 시장정보의 분산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협중앙회 유통정보센터에서는 소비지 및 산지의 각종 시장정보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여 라디오 방송이나 정기간행물 등 각종 매스컴과 자동응답전화 및 무선국 T.T.Y.를 통해 생산자, 소비자를 비롯한 유통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있다. 유통정보제공단계에서의 정보전달수단, 내용, 시설 및 전달수단별 이용시간 등을 요약하면 <표 3-5>, <표 3-6>과 같다.

2. 韓國의 輸入水産物 流通情報體系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국내유통정보(국내생산량, 원양어획량, 도소매가격, 전체유통량, 소비패턴의 변화, 장단기 수급전망 등)와 수입정보(무역환경, 세계의 수산물 수출입동향, 국내수입량, 해외지사정보 등)등을 고려하여 수입품목 및 수입량을 결정하는 것이다(<그림 3-10>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 유통정보의 흐름은 전술한 바와 같은 공식적이고 투명한 정보체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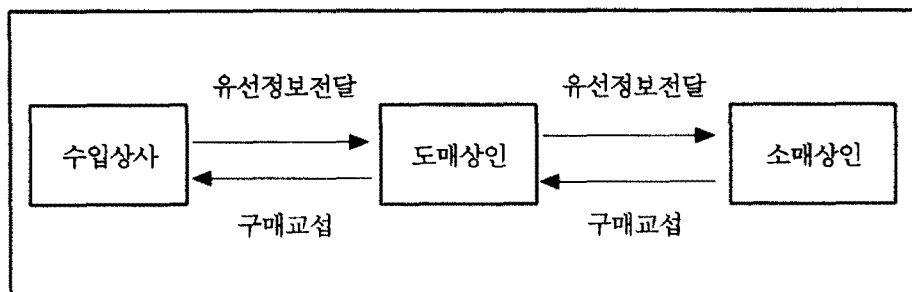
<그림 3-9>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 정보관련도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은 수입수산물의 공급시장을 지배하는 대형종합상사에 의하여 생성 및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수산물의 판매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이지 못하고 연고 판매선을 중심으로 전화선을 이용하여 전달되고 있다.

<그림 3-10> 수입수산물의 판매정보 전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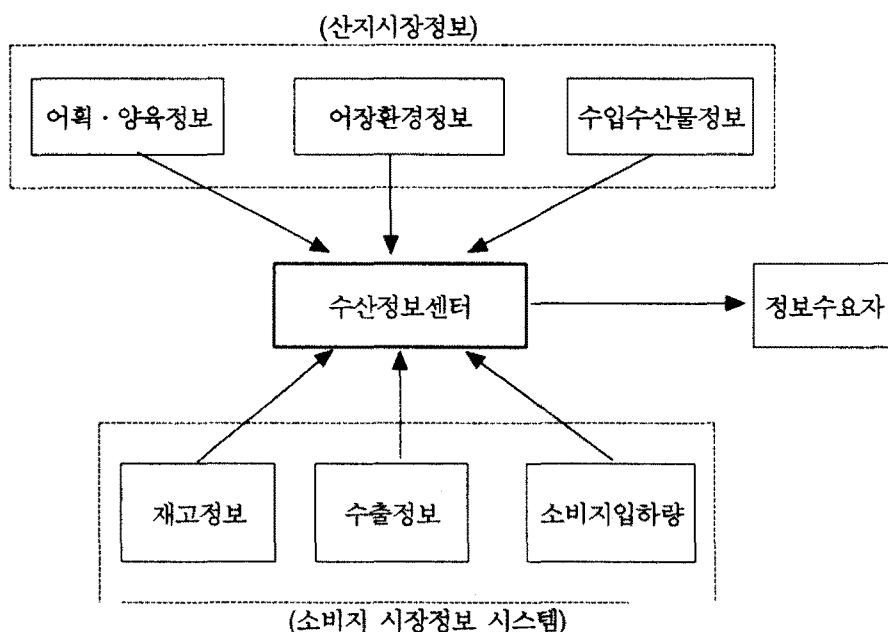


수입수산물의 정보흐름이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 유통정보는 왜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지배되는 편중현상(또는 정보독점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수입수산물의 유통통계 자료의 부정확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경제적으로도 비능률을 초래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보왜곡 또는 정보독점 현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투기적인 수산물 수입 행동에 의하여 물가불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거래규모가 불확실한 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원의 추적이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 경제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거래와 유통정보의 흐름으로 인하여 물가상승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개입을 무력화시켜,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조절기능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수입수산물의 유통정보 및 공급량이 대형수입상사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는 현실은 도매단계를 대형수입상사(거대자본가 상인)에게 예측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순수 민간유통자본의 몰락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수산물 시장정보란 어업생산을 출발점으로 하여 소비에 이르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흐르는 정보전반을 가리킨다. 유통과정, 즉 생산이나 수입에 의한 공급 - 재고 - 가공 - 소비 및 수출 등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에는 수량, 품질 가격 등을 포함한다.

<그림 3-11> 일본의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자료 : 『水産情報處理』(全國高等學校 水産教育研究會編, 1995), p.127.

이들 각 단계의 정보를 일본은 더욱 세분화하여 취급하고 있다. 즉, 어획량, 산지위판량, 어장환경, 수입과 수출, 재고량, 소비지 입하량,

기타(자원상태 예측, 경제동향)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의 정보를 수집·축적·정리하고 가공하여 제공하는 전국규모의 수산물 정보시스템은 <그림 3-11>과 같이 크게 수산정보센터, 산지시장정보, 소비지시장정보, 정보수요자 등 4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 3 절 수산물 輸入管理制度的 運營實態

1. 輸出入管理制度的 運用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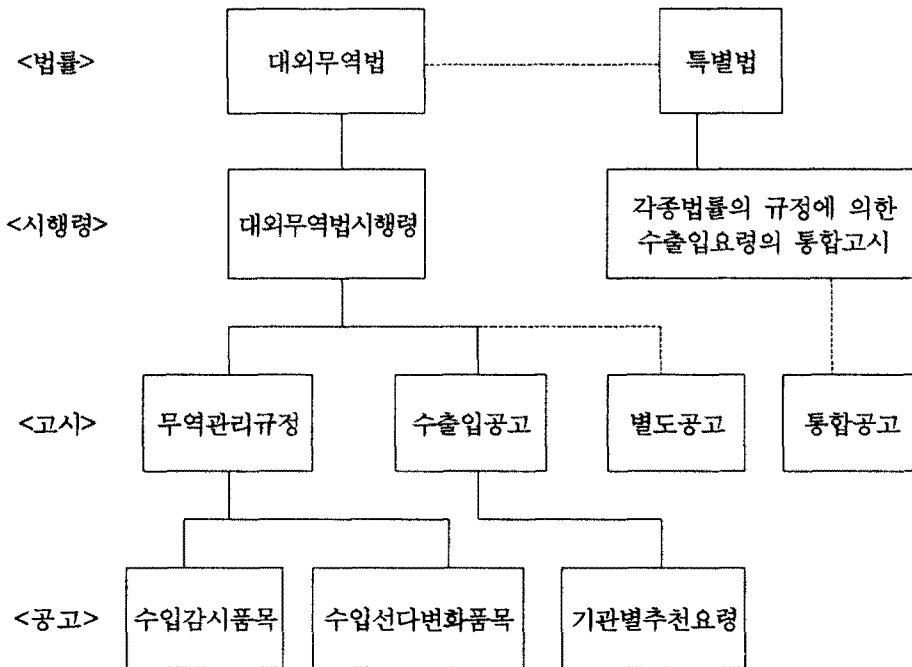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일반적으로 대외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내지는 통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역관리는 수량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외국환관리 및 관세와 함께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3대 장벽을 이루고 있다.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관리방식 가운데 하나로서 무역관리의 형태는 일반법과 특별법 및 기타 수많은 관련규칙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 무역관련 법·제도 중에서, 우선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의 수산물 수출입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그 개요 및 법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찰하고, 수산물 수출입에 관련된 관세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가. 수출입관리제도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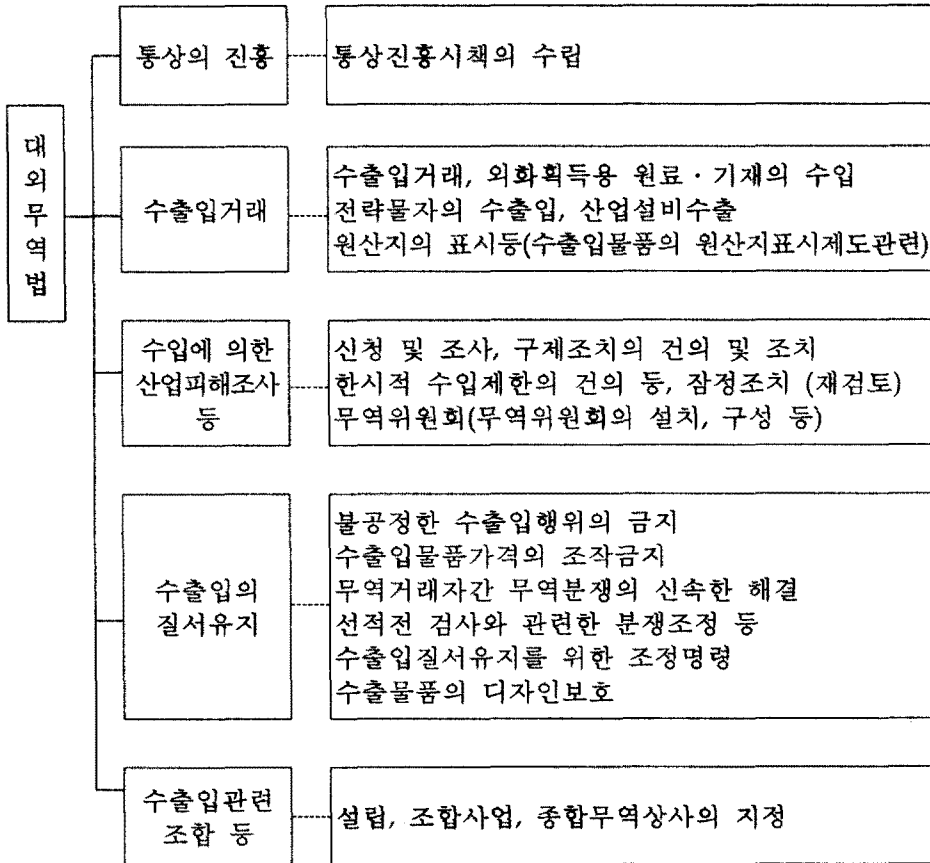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산물의 수출입관리는 대외무역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법과 각종의 법령 및 고시, 공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12> 참조).

<그림 3-12> 우리나라의 수출입관리법 체계도



한편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무역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수출입업 등록의 면제」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의 2 「수출입업 등록의 면제규정」 및 외자도입법, 식품위생법 등이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법규에는 외국환관리법·관세법·수출보험법 등이 있다.

<그림 3-12> 대외무역법 체계(전문개정 96.12.30 법률제5211호)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1조).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외무역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출·수입을 계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그와 반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도 있다. 즉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할 때, 또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은 규정하고 있다.

나. 수산물 수출입승인제도

수출입승인제도는 수출입의 서면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입관련 대인·대물 및 대금결제 상황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외국환은행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며, 물품의 수출·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 거래형태 또는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수출입건별로 통상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행정의 신속화와 효율화를 도모키 위해 수출·입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의 승인은 신용장 방식 혹은 추심결제 방식이 가장 정형화된 거래형태이나 이외에 특수한 경우의 특정거래방식이 있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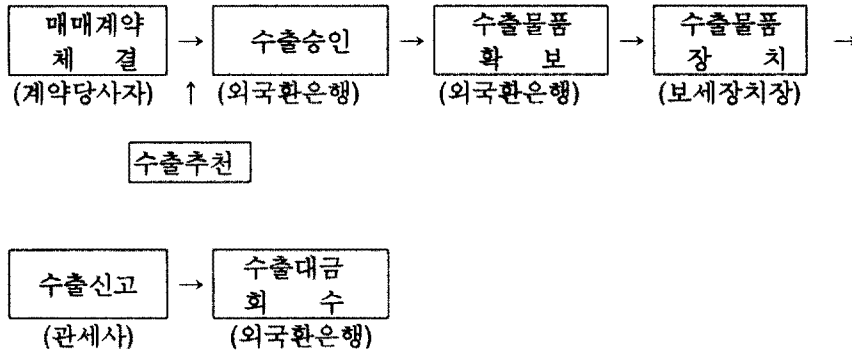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12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동분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미분류수출입이라 하여 수출입승인시 통상산업부장관이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표 3-7> 수출입거래유형별 승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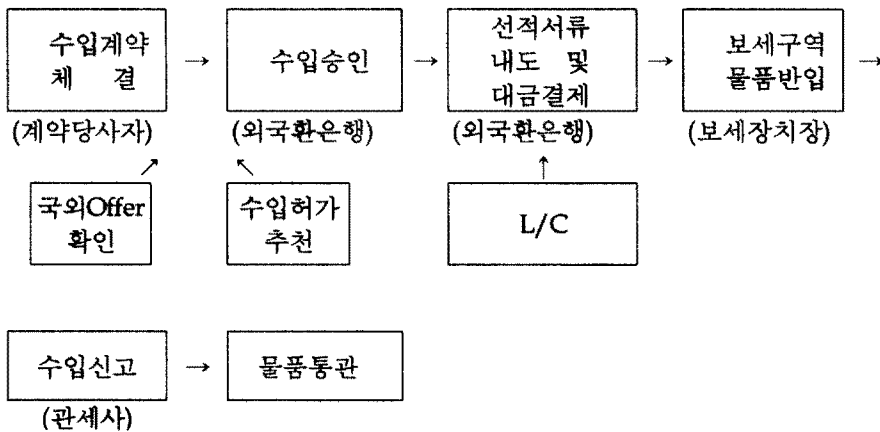
수출입거래유형	승인기관
일반수출입	- 외국환 은행의 장
수출추천기관의 장의 승인대상	- 수출추천기관의 장 * 대상거래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명시
연계무역	- 외국환은행의 장
전략물자	- 일반산업용물자 : 통상산업부장관 - 방산물자 : 국방부장관 - 핵관련물자 : 과학기술처장관 * 각부처장관 허가후 외국환은행장의 승인
남북한 교역	- 자동승인(AA품목) : 외국환은행의 장 - 제한승인품목 : 통일원장관

또 일반적인 수출입승인절차 또는 제한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출입을 허용하는 수출입승인의 면제대상 거래가 있는데 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관리규정 및 별표 3-1, 3-2에 Positive List로 게재되어 있는 대상거래를 말한다. 수출절차와 수입절차의 일반적인 사례를 도표화 한 것이 <그림 3-14>와 <그림 3-15>이다.

<그림 3-13> 수출절차(일반적인 예)



<그림 3-14> 수입절차(일반적인 예)



다. 수출입 품목관리 제도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리제도는 수출,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으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말한다. 수출

입업자는 당해품목의 수출·입 승인 이전단계에 해당품목이 규제조치에 해당될 경우 동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게 수출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수출입품목 관리체계는 크게 분류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품목 관리제도로써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공고등 수출입공고체계와 49개 개별법에 의한 품목별 제한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통합공고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종래의 공고방식은 수출·수입 제한품목을 모두 공고하는 무역계획제도(Positive System)였으나 현재는 수출·수입 제한품목에 공고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

수출입 공고의 공고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입공고는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로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수출입별도 공고는 성질 및 경제적 효용이 상이한 모든 물품의 수출입관련 사항을 수출입공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어려움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출입승인제도를 적절한 방법으로 운용키 위해 중고품, 산업설비의 수출 등 6개군에 대해 별도로 정한 공고를 말한다.

셋째, 수입선다변화공고는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공고를 말하는데, WTO협정에 위배되는 제한조치로서 철폐 예정에 있다.

넷째,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산업용 물자, 무기류 등 방산물자 및 핵관련 물자, 장비로서 COCOM이 정한 Core List 해당 품목의 수출입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해놓은 공고로서 품목 및 규격, 대상지역 및 수입허

가 절차에 대한 규정을 의미한다.

다섯째,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외의 다른 법령(특별법)에 의하여 수출, 수입에 관한 제한규정을 통상산업부장관이 개별법관련 부처와 협의한 후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수출입요령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라. 수출지원제도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은 크게 수출금융지원, 세제지원, 상역행정지원 등 3가지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수출지원부문의 경제적 효용성을 부연 설명하면, 첫째, 무역금융은 수출물품 생산이나 집하에 따르는 수출업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적기에 수출품을 공급케 함으로써 수출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목표를 달성키 위한 정책금융으로 수출활동 또는 수출품 생산활동과의 직결성이나 수출전과정 지원의 포괄성 및 타지원 수단에 비하여 지원폭이나 지원방법을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지원방식 조정의 기동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둘째, 수출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부문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의 두 부문으로 구분되며, 이 중 직접세를 통한 지원은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등과 같은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수출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처리, 해외접대비의 손금인정과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간접세를 통한 지원은 부가가치세 감면, 특별소비세 감면 등과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관세환급제도는 수출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원자재의 국산화 촉진 등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 등을 징수함으로써 복잡한 사후 관리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세관과 수

출업체의 행정절차가 간편하게 됨과 동시에 정액환급제도의 확대 실시로 관세부담이 적은 기초 원자재의 수입과 국산 원자재로의 대체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상역행정상 지원제도는 무역거래상 수반되는 제반 위험, 즉 수입국의 전쟁이나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과 파산 또는 대금지급의 지연 및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수출상품 생산자 또는 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으로서의 수출보험제도와 행정면에서 수출입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항구적 수출증대와 수출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수출입조합 설치, 수출종합상사의 육성, 민간사절단의 파견 등의 지원이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는 개방화를 지향하는 신국제무역질서속에서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의 이분법적 구분은 불명확하며, 국제경쟁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간 유효경쟁을 통한 비교우위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출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오히려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대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GATT체제내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서 수출지원과 관련한 보조금 감축의 문제가 협의되고 있으며, 종래의 GATT규정 제6조, 16조, 23조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경라운드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이 규정을 보완한 「국제보조금협정(GATT 6조, 16조, 23조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국제보조금협정에 대하여 보조금에 대한 규제의 강화, 보조금 통고제도 및 분쟁해결절차의 강화 등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 캐나다 등의 주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중 직접세의 감면조치와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정부재정자금의 무이자 융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GATT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금융상 지원은 GATT 규정의 금리상의 혜택으로 인한 수출보조로 분류되어 국제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UR협상과 대외규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수출지원제도는 첫째, GATT 협정, 국제보조금 협정 등의 국제규범에 적합하게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내지 폐지하고 둘째, 수출지원제도를 산업정책, 즉 기술개발 지원, 수출시장 개척 등 마케팅상의 위험부담 경감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輸入管理制度의 運營實態

가. 관세제도

1) 관세제도의 운영원칙과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관세법의 일부로 결정·조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로서 정해지는 관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의 두 종류이다. 기본세율은 관세법의 별표 관세율표에 나타나는 세율을 의미하며 관세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잠정세율은 관세율표 괄호 안에 표기되며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한다. 잠정세율의 설정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즉시 기본세율로 환원토록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이 정한 일정 범위와 조건 내에서 행정부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실행관세율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즉 탄력관세와 국제협력관세가 이에 해당한다.

관세법에서 위임받아 행정부가 관세율을 변경·조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무부장관에게 요청
- ② 관세심의위원회에서 관세율조정에 대한 여부를 심의
- ③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관계부처간 의견수렴과 합의로 조정
- ④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공포하여 시행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은 1970년대 특정산업보호 위주의 관세지원을 통한 산업지원정책에서, 1990년대에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적 자원배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주목적을 두고 균등관세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본관세율의 대폭인하와 산업간 관세율 격차의 축소를 추진하여 왔다. 이는 관세의 중립화를 통하여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균등관세율의 책정을 원칙으로 Uniform Rate System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관세운용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8> 연도별 평균관세율 인하 추이

(단위 :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양허세율 ¹⁾	17.9	16.8	15.6	14.5	13.3	12.2
기본세율 ²⁾	10.1	8.9	7.9	7.9	7.9	7.9

주 : 1) 양허세율은 신HSK에 의한 1992년 3월 제출 양허안에 입각

2) 평균치는 단순평균기준임

이와 같은 정책기조 속에서 UR협상과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관세율 예시제에 의하여 저관세율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이미 1983~1987년 기간동안에 1차 관세예시와 1989~1994년 기간중 2차 관세예시계획을 완료하여, 평균관세율을 80년대초 20%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10년만에 1/3 수준인 7%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우리나라가 균등관세율을 지향하면서 관세율인하 예시제를 채택한 것은 관세인하 수준을 미리 알려 정책방향을 뚜렷이 제시하고 국내산업이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예시제는 국내업체가 사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관세인하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외국의 관세인하압력을 비교적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세율인하 예시제는 평균관세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인하하였으나, 현재 WTO 등에서 검토되고 있는 무세화 및 관세조화협상이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립 속에서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예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산업간 경쟁력수준과 외부성 및 동태적 환경자원보호 문제를 무시한 균등세율 예시제의 추진은 수산업의 경우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율체계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중립적 균등관세율 체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가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는 해당 산업이 혜택을 보지만 결국에는 보호비용이 국내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관세율 조정은 산업지원정책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비효율성을 갖기 때문에 관세를 통한 산업보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한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균등관세율체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가능한한 중심관세율은 저율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산업간 차등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로 인한 산업보호가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여 온 것이 사실이므로, 관세는 마땅히 산업보호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와 같은 저율관세는 산업보호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율의 균등관세제도가 사양산업에 대한 포기를 가속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마찰 등의 국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관세인상은 어려우나 탄력관세를 이용한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관세인하 예시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관세율을 더욱 낮추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다소 인상하여 유치산업의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업간 균등관세율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PEC에서 검토되고 있는 역내 무세화 자유무역에 대한 논의는 역내수출국이 역외수출국 보다 생산비가 저렴할 경우에는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와 후생증진에 기여하지만, 생산비가 높을 경우에는 무역전환효과로 후생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탄력관세제도의 체계와 운영

탄력관세제도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관세율조정 권한의 일부를 법률이 규정된 범위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는 제도를 말하며 관세법 10조에서 16조에 이르는 8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 덤핑방지관세(제10조)로 정상가격이하로 판매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되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관세이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관세로 추가하여 부가하는 것이다.

둘째, 보복관세(제11조)는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이나 선박 또는 항공

기 등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셋째, 긴급관세(제12조)는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그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 조정관세(제12조의 2)는 새로이 수입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중에서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구조 변동 등으로 물품간에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한다.

다섯째, 상계관세(제13조)는 외국에서 제조나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으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 외에 해당보조금 등의 금액이하를 관세로 부과한다.

여섯째, 편익관세(제14조)는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기존의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편익의 한도내에서 관세상 편익을 부여한다.

일곱째, 계절관세(제15조)는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한다.

여덟째, 할당관세(제16조)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일정수량까지는 저관세율을 부과하고 일정량을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고관세율을 부과하는 이중관세율 제도이다.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다 동종·유사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

격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역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국가나 국제기구와 관세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협상을 통하여 양허되는 관세를 국제협력관세(제43조의 8)라 한다. 관세협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본관세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관세율 운용의 우선순위는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 관세 · 보복관세 · 긴급관세 · 조정관세 · 상계관세 · 물가평형관세 · 할당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한다.

편익관세와 국제협력관세의 세율이 기본관세율 · 잠정관세율 · 조정 관세율 · 물가평형관세율 · 할당관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한편, 탄력관세의 발동요건과 관세율의 변경범위 등 운용현황은 < 표 3-9>과 같다.

<표 3-9> 탄력관세의 운영현황

종류	발동요건	관세율 변경범위	발동 근거
덤핑방지관세	◦ 정상가격이하로 판매되는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 관세+(정상가격-덤핑가격)	총리령
보복관세	◦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 침해 상당액의 범위 내	대통령령
긴급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당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내	총리령
조정관세	◦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산개발 물품의 보호 ◦ 농산물 등 국제경쟁력 취약물품의 국내시장 및 산업기반 유지	◦ 기본관세율+인상세율 ≤100% ◦ 농림축산물인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 상당률	대통령령

<표 계속>

특별긴급관세 (농림축산물)	◦ 물량기준특별긴급관세 : 당해년도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정해진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할 경우 ◦ 가격기준특별긴급관세 : 수입가격(1988~1990년 평균수입가격)의 90% 미달할 경우	◦ 관세상 당치 (Tariff Equivalent : TE)의 1/3 범위내에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 ◦ 수입가격과 기준발동 가격과의 가격차에 따라 구간별로 합산 누진적으로 부과	총리령
상계관세	◦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때	◦ 관세+보조금(장려금) 이하금액	총리령
편의관세	◦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의를 받지 아니한 나라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	◦ 기준가격 - 과세가격 = 관세	대통령령
계절관세	◦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계절구분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율의 범위내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을 감한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낮게 부과	총리령
할당관세 (인하)	◦ 물자수급 원활 ◦ 수입가격급등 관련 품목 국내가격 안정 ◦ 세율불균형 시정	◦ 일정수량 범위내→기본관세율-40%포인트	대통령령
할당관세 (인상)	◦ 특정물품 수입억제	◦ 공산품 : 일정수량 초과분→기본관세율+40%포인트 ◦ 농산품 :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관세율 인상	

자료 : 관세법 (일부 개정 1996.12.30)

3) 관세양허의 실태 및 조정관세 부과현황

우리나라는 GATT와 UNCTAD의 GSTP 그리고 ESCAP의 방콕협정 등 국제기구에 의한 관세협상과 쌍무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세(관세양허)를 운영하고 있다.

① GATT 관세양허 : GATT의 UR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선진국과 대등하게 전품목을 대상으로 협상하였으며, 협상의 결과

1990년 8월에 관세인하양허계획을 GATT에 제출하고 관세양허를 하였다. 관세율인하는 수입액가중평균 33.4% 인하하였으며, 관세양허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액기준 58%, 품목수 기준 70%를 양허하였다.

수산물은 354 품목중 144품목(42.6%)에 대하여 이미 관세를 양허하였으며, 양허세율은 1992년 현행세율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관세인하의 부담은 없다. 다만, 냉동계 1품목은 1986년 세율이 20%, 1992년 세율이 20%이었으나, 14%로 양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144품목 속에는 조기(냉동), 대구(냉동), 명태연육(냉동), 미역(건조, 염장, 기타)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연근해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210개 주요 품목(갈치, 오징어, 고등어, 붕장어, 멸치, 바지락, 김 등)은 양허하지 않음으로써, 필요시 관세인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 GSP 관세양허 : UNCTAD가 주관하는 범개도국간의 특혜무역제도 (GSP :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협정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맹국들에게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하도록 하고 있다.

GSP는 개도국들간에 무역장벽의 완화와 철폐를 통하여 교역증진과 후생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남북협력의 일환으로 1976년 UNCTAD의 주관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관세양허협상을 통하여 1988년 GSP각료회의에서 48개국이 1,550개 품목의 관세인하를 합의하고 1989년에 정식 출범하였다. 회원국의 수는 48개국이다.

③ 방콕협정에 의한 관세양허 : ESCAP가 주관하는 개도국간의 무역특혜협정인 방콕협정에 따라 특혜관세확대협상이 1990년 5월에 타결됨에 따라 협정참가국인 우리나라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관세품목을 32개 품목에서 20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가맹국중 최

빈국인 방글라데쉬와 라오스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양허관세 품목을 12개에서 29개로 확대하여 양허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④ 쌍무협상에 따른 관세인하 : 국제협력관세 중에서 통상진흥을 위한 쌍무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낮게 운용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헝가리 관세협상(1990년), 한·영 위스키협상(1990년),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1990년), 한·미 포도주협상(1990년) 등이 있다.

GATT규정상 긴급관세의 발동요건이 GATT양허품목으로서 GATT 19조 세이프가드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관세율을 인상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90년에 관세법개정을 통하여 종전 긴급관세의 적용대상이었던 GATT 비양허품목의 수입억제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인상 등의 조정관세 발동요건을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은 수입급증으로 국내 동종산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수입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어, 수산물 수입자유화 실시 이후 현재까지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긴 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 수산업에 큰 영향을 입히지는 않았다.

조정관세 적용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조정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조정관세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6월 현재 조정관세(관세법 제 12조의 2) 적용품목은 총 26개 품목이며, 조정세율은 14~100%까지 부과되고 있다. 부과대상 품목수는 1992년 3개 품목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6개 품목, 1994년에 11개 품목, 1995년에 14개 품목, 1996년 20개 품목, 1997년 26개 품목이 지정되었다.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수입실적이 전혀 없거나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은 35%인 9개 품목

에 불과한 실정이다.

새우젓의 경우에는 1988년 7월 20일 이후 8년 동안 산업피해구제제도에 의해 수입이 전면 제한되어 왔으나, 1996년말 구제기간이 종료되어 조정관세 100%를 부과하고 있으나 1997년 1/4분기에 수입액이 이미 100만불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제2장 <표 2-19> 참조).

나. 수입수산물의 검사·검역제도

수산물 완전수입개방으로 각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수입수산물의 반입이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소비패턴이 변화하게 되고, 건강과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도 식품에 대한 검사와 검역을 자국민의 건강보호와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검역업무의 무역규제 수단화는 기본적으로 UR정신에 위배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UR 동식물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 SPS)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수입, 유통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하고, 수출대상국의 수입검사·검역제도에 대응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검사·검역제도를 정비해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수산물 검사는 종래의 수출수산물 검사를 전담하고 있던 국립수산물검사소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산물 수입검사에 관한 근거법이 수산물검사소 설립모법인 수산물검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으로, 보건복지부의 위탁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검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산물 검역과 관련된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검사·검역제도와 관련국제협약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인력과 장비가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검사·검역에 관련된 제반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현재의 수산물 검사·검역제도와 실태를 고려하여 향후 수산물 수출입 검사·검역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검사·검역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개편과 확립에 따라 주요국의 검사·검역제도를 연구하고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는 검사·검역제도를 국제적 기준과 권고안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1) UR 위생 및 검역(SPS)분야 합의 내용

198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GATT 논의에 있어서 GATT XX조 일반적 예외항 중 b항의 위생 및 동식물검역조치를 각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나뉘대로의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광범위한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이 규정은 GATT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국은 임의로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는 농림수산물 무역 자유화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수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GATT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농수산물 무역은 별도의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제10차 농산물협상에서 「위생/검역 작업단(Working group on SPS)」설치가 합의되었고,

1990년까지 12차의 작업단회의를 통해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분야의 초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1991년 3월 UR협상 재개 이후 SPS 협상은 상당한 합의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1991년 12월에는 둔켈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SPS 합의초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많은 논란을 거친 후 1993년 12월15일 UR합의와 동시에 SPS분야도 합의를 보았다.

농산물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SPS 협상에서는 쟁점에 따라 입장이 다르게 제시되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농수산물을 수출 또는 수입만하는 처지가 아니고 수입국의 SPS 규제조치를 완화하려는 수출국의 입장과 자국민의 건강과 동식물 보호를 위해 위생, 검역규제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수입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양면적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SPS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SPS 합의의 주요내용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문제, 동등성의 원칙 인정, 위험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정 보호수준의 결정, 병해충미발생 및 제한적 발생지역의 문제, 투명성 문제, 방역·검사 및 승인절차, 기술지원, 개도국 특별우대,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행정기구, 시행문제 등 11가지이다. SPS 합의는 위생 및 검역문제가 WTO체제로 편입되고 각국 SPS규제의 국제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외에 많은 함축성을 담고 있다. 즉, SPS가 WTO의 유일한 합법적인 수입제한제도이며, 위험평가제도의 신규도입 혹은 운영확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기존의 수입금지지역이 축소되고, 동등성 인정요구가 급증하고, 검역규제에 대한 과학적 입증제시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와의 조화문제에 있어서도 현재의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와 상이한 국내 SPS 규제조치는 국제기준에 합치시키거나 과학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여야만 향후 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SPS 규제의 국제기준 일치 여부 조사 및 과학적 근거규명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0> SPS 주요 합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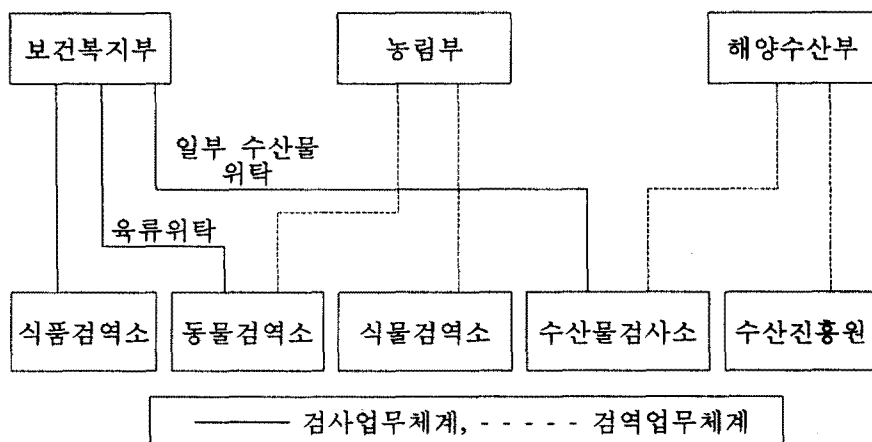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국제기준과의 조화문제	0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조화함 0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과학적 타당성에 근거하거나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적절한 보호수준을 결정
동등성의 원칙	0 수출국과 수입국의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해당 SPS조치를 수 입국의 그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 0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등성 인정 요청시 협의할 의무 가 있음
위험평가제도 도입과 적정보호수준 의 결정	0 위험평가지 고려기준: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가 공 및 생산방법, 관련 검사 및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특정병균 및 해충의 발생수준, 병해충 미발생지역의 존재, 생태 및 환경조건, 검역 및 기타 처리사항 0 적정보호수준 결정시 고려요인:경제적 요인 및 SPS에 의한 교역제한 효과
병충해지역 관련사항	0 수입국은 SPS조치는 수출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 여 조정 0 수출국은 병해충 미발생시 또는 제한적 발생 증거를 수입국에 제공
투명성	0 각국은 SPS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
방역, 검사 및 승인절차	0 각국의 식품, 음료, 사료첨가제의 사용승인 및 오염물 질의 허용기준설정 등과 이와 관련된 검사/검역방법 및 절차
기술지원	0 개도국에 대한 검역관련 기술지원
개도국 특별우대	0 개도국에 대한 장기간의 유예 허용 (전부 또는 일부 유예)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0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행정기구	0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 설치
시행 및 최종규정	0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적절 한 조치 시행 0 각종 유예규정

또 동등성의 인정문제에 있어서도 향후 우리나라 수입금지 수산물에 대한 수출국의 동등성 인정요청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수입금지조치는 더이상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수입국의 자의적인 수입금지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검역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위험평가제도 도입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관점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산물의 검사와 검역과 관계된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운용경험 축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수입수산물의 검사·검역 체계

우리나라의 검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로 되어 있으나, 육류와 관련된 것은 국립동물검역소에서, 수산물과 관련되는 것은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각각 위탁·처리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식물과 관련된 검역업무는 원칙적으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들 검사·검역 업무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15> 수산물 검사·검역의 업무 체계도



검사·검역업무는 5개 검사·검역기관에 의해 복잡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산업활동에 있어서 검사·검역 업무의 차이를 보면 검사는 수입검사와 수출검사, 수출입과 상관없는 국내소비용 식품에 대한 검사로 나누어진다. 이에 반해 검역은 수입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3-11>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의 비교

네거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	
장점	단점	장점	단점
· 수입금지품목과 지역만을 고시하여 수입검사·검역의 운용이 용이함. · 본래 모든 병충해의 위험평가를 한 후 수입금지품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학적, 기술적 축적이 없이도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을 선정할 수 있음. · 금지병충해를 법적인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 이의제기에 대응이 용이함.	· GATT/UR SPS 합의 결정문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한 위험평가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는데 용이하지 않음. · 수입금지품목에 대해서만 위험평가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위험평가제도의 활용폭이 좁고 조건부 수입허가를 확대할 수 밖에 없음.	· 전품목, 전세계를 규제품목/지역으로 한후 위험평가에 따라 금지품목/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철저한 검사·검역이 될 수 있음.(수입허가제 운용 가능) · 위험평가과정에서 국가의 필요성 및 국익의 상용도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을 해제해 나갈 수 있는 탄력성이 있음.	· 병충해 분포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외병충해의 특성, 분포, 기주식물, 방제방법, 경제적 중요도 등 과학적, 기술적 지식축적과 이를 평가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 · 금지 병충해의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수입금지품목에 대해 수출국으로부터 계속적인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음.

자료 : 이재욱 외,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검사·검역체계는 크게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과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구분된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전 품목과 전세계를 규제대상으로 생각하고 각 지역이나 품목별로 위험 평가의 결과에 따라 금지지역이나 품목을 해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지역의 전제품에 대해 검사와 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역의 규제는 쉽게 이를 수 있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그와 반대로 전지역과 전품목에 대해 무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 지역과 규제 품목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정보가 다소 부족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검사와 검역의 업무가 특정 품목과 특정지역산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검사·검역시스템이 포지티브 시스템인데 반해 대부분의 개도국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3) 수산물 검사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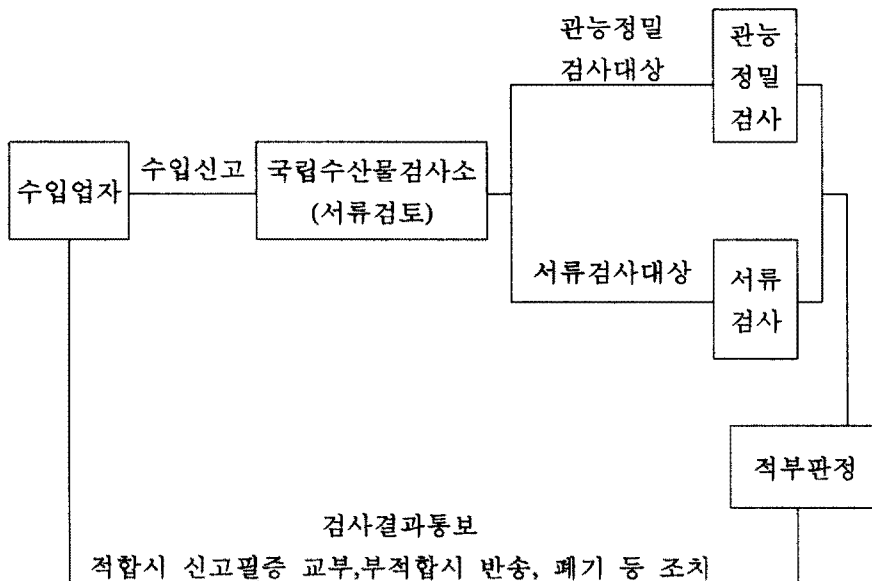
수산물 수입검사제도는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제37조에 의해 수산 동식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업무에 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위탁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업무를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수입수산물의 검사종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능검사와 정밀검사에는 서류검사도 포함된다. 따라서 서류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은 대부분의 수입수산물에 해당된다.

관능검사는 현품이나 검체를 보고 성상, 색깔, 맛, 냄새 등에 의하여 적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검사대상은 서류검사의 대상수산물중 일정한 수산물을 제외한 것이 된다.

이 법에서 제외되는 식품의 종류에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대상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말리거나, 숙성·염장한 식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도 따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배제되며, 익힌 것중에도 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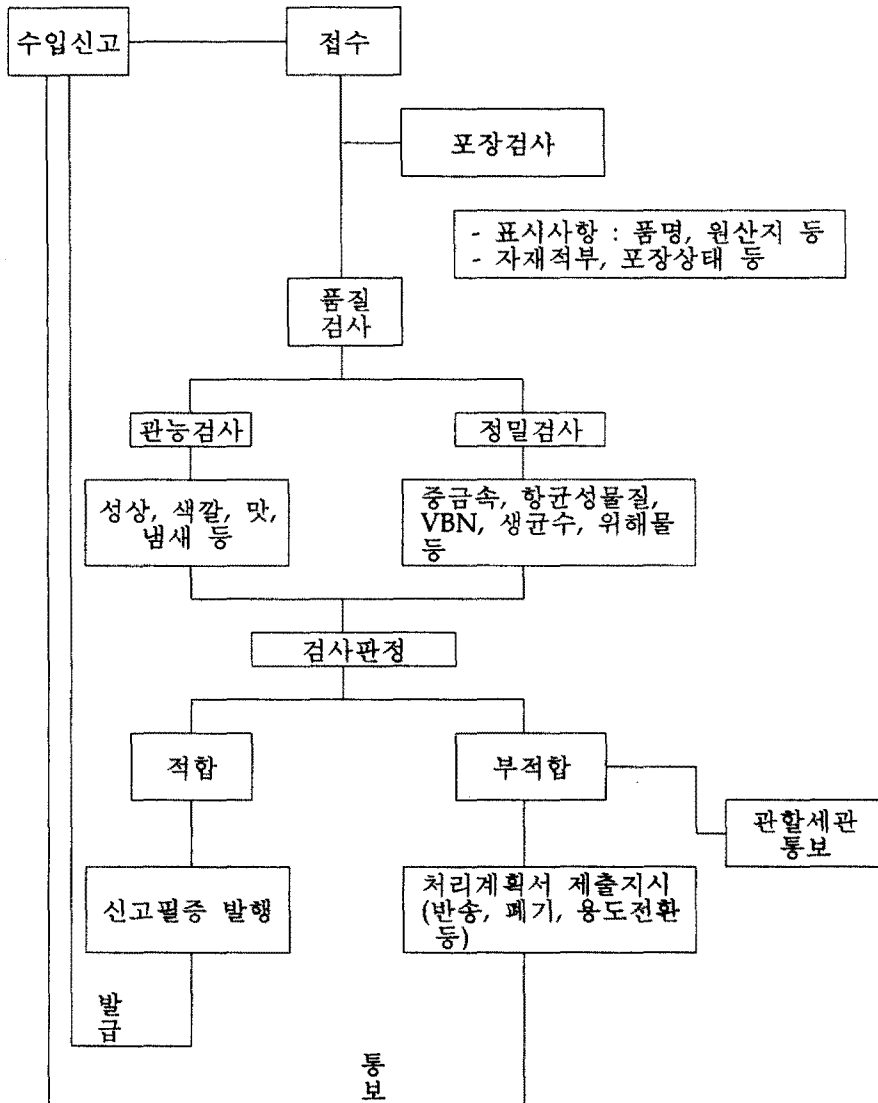
<그림 3-16> 수입수산물 통관절차



정밀검사는 물리적, 화학적, 세균학적 수단에 의해 기준 및 규격에 적합 여부 또는 특정한 물질의 함유,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하는 검사를 말한다. 정밀검사의 대상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데,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 대상이 된다. 정밀

검사는 수입신고자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공인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등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림 3-17> 수입수산물 검사절차



자료 : 국립수산물검사소

한편 관능검사 항목에는 색상, 색깔, 맛, 냄새, 선별, 그레이징, 활력도 등이 있으며, 정밀 항목에는 수준, 선도(VBN), 생균수, 중금속(수은, 납 등), 방사능, 항균성 물질, 기생충, 패류독소 등이 있다. 이러한 관능검사가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림 3-17>과 같다

4) 수산물 검사·검역방법

수산물 검역은 현재 활어 수입에 대한 검역 업무를 국립수산물검사소가 맡고 있고 국내 양식용 종묘 등의 이식과 관련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 병리과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된 체제하에 있다.

활어에 대한 수산물검사소의 검역업무는 검사의 연장선상에서 기생충 검사나, 인체와 관련된 전염병 병원체 검사 등 일부 검역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산물검사소는 기생충, 어병 등 검역에 관련한 제반 역학조사기능이 미비할 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형편이다. 수산진흥원 병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양식용 종묘 등의 이식과 관련한 검역업무는 농림수산부령 제1138호(94. 5. 14 일부개정)에 의한 '수산 동식물 이식 승인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동 규칙 제4조 6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이식 승인을 할 때에는 이식 품종 반입시에 국립수산진흥원장, 수산연구소장 또는 내수면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전문직 공무원을 입회시켜 병충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염된 품종에 대하여는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식수산동식물에 대한 검역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선 이식 승인을 받은 자는 반입 5일전까지 관할 수산연구소에 병충해 감염 검사를 의뢰하고 통관시에는 무병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검사 의뢰를 받은 연구소장은 검사 능력이 없거나 업무 사정상 검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반

입지에서 가장 가까운 연구소(수산진흥원 본원 포함)에 검사를 이첩 처리토록 한다.

이식 동식물에 대한 검역시 검사항목은 수산진흥원 내부지침에 의해 검사가 가능한 세균성 및 기생성 질병에 한하지만, 바이러스 질병 검사는 민원인이 수산 동식물의 이식을 신청할 때, 이식대상 수산 동식물이 질병 발병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출국가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국립수산물진흥원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에 관한 반출 국가의 관련 자료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전 제출케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진흥원 병리과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 수산물 검사·검역실태

① 제품별 수출입 검사실적 : 수산물검사소에 의한 수산물 검사물량은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수입수산물의 검사가 1991년 1월부터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에서 실시하였고, 이듬해 3월부터 본소 및 전국지소에서 확대실시되어 오고 있다. 즉 1981년 검사건수 8,078건, 검사물량 191,324M/T이던 것이 1991년으로부터 수입검사업무가 추가되어 1996년에는 총검사건수가 23,589건, 총검사물량은 473,558M/T로 늘어났다.

수산물 검사를 수출입별로 구분해보면 수출검사의 경우 1993년부터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검사절차 간소화되어 전제품의 의무검사제에서 희망검사로 전환되고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 수출이 줄어들어 검사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수입수산물의 검사는 1992년부터 크게 늘어 1994년부터는 수입위주의 검사로 역전되었다. 이는 1994년 수입수산물의 신고 검사업무가 수검으로 일원화된 까닭도 있다. 그리고 국내소비용 검사실적은 1993년 4월 수산물검사제도 개선시부터 별도 집계되기 시작하였다.

수산물의 검사총량에 대한 실적을 제품별로 살펴보면 <표 3-19>와 같다. 검사실적은 수출검사와 수입검사의외에 국내소비용 검사를 들 수 있는데, 국내소비용 검사는 다시 정부비축용과 국내소비용으로 구분 되고 이는 모두 수출검사에 포함된다.

<표 3-12> 연도별 수산물 검사실적

(단위: 건, M/T)

연도	수 출 검 사 ¹⁾		수 입 검 사		합 계	
	건 수	물 량	건 수	물 량	건 수	물 량
1981	8,078	191,324	-	-	8,078	191,324
1985	9,295	203,937	-	-	9,295	203,937
1990	10,304	246,760	-	-	10,304	246,760
1991	10,032	240,991	1,065	115,712	11,097	356,703
1992	9,097	222,943	4,478	214,604	13,575	437,447
1993	6,301	130,336	6,916	248,126	13,217	378,462
1994	4,336	112,059	12,950	262,202	17,286	374,261
1995	2,360	92,109	15,088	263,271	17,448	355,380
1996	2,818	97,084	20,771	376,486	23,589	473,570

주 : 1) 국내소비용 검사 포함.

자료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연보, 각연도

<표 3-13> 제품별 수출입 검사실적(1996)

(단위 : 건, M/T)

구 분	수출검사		수입검사		국수용 검사		합 계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활어·패류	-	-	2,920	16,803	-	-	2,920	16,803
신선·냉장	-	-	6,770	7,284	-	-	6,770	7,284
냉 동 품	2,142	66,610	9,813	336,717	46	21,645	12,001	424,972
건 제 품	172	156	-	-	100	1,172	272	1,328
염 장 품	103	115	402	1,681	15	3,167	520	4,963
해 조 류	-	-	810	13,296	53	1,664	863	14,960
통 조 립	123	2018	-	-	-	-	123	2,018
기 타	64	537	56	705	-	-	120	1,242
합 계	2,604	69,436	20,771	376,486	214	27,648	23,589	473,570

자료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연보, 1996

1996년의 총검사전수는 23,589건으로 이중 순수수출검사전수가 2,604건인 반면 수입검사전수는 20,771건이다. 물량면으로 살펴보면 순수수출검사물량은 69,436M/T이고, 수입검사물량은 376,486M/T로서 총검사물량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소비용 검사물량은 27,650M/T이 된다.

수출검사는 냉동품이 건수 및 물량 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수에서 건제품이, 물량면에서는 통조림이 많다. 수입검사에서도 냉동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건수면에서는 신선·냉장품이, 물량면에서는 활어패류가 많다. 수입검사에서 통조림 등이 빠진 것은 수입검사제도상 통조림과 같은 고차가공품은 식품검사소에서 실

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소비용 검사는 정부비축용이나 일반 소비용이기 때문에 냉동품, 건제품 등이 대부분이다.

<표 3-14> 국가별 수입검사실적(1996)

(단위: M/T, 천달러, 건)

국명	물량(A)	금액(B)	건수(C)	건당중량 (A/C)	건당금액 (B/C)
러 시 아	114,934	180,926	1,091	105.35	165.84
중 국	84,073	218,410	5,728	14.68	38.13
미 국	67,608	110,739	5,614	12.04	19.73
아르헨티나	25,508	26,537	160	159.43	165.86
뉴질랜드	13,691	23,415	1,229	11.14	19.05
일 본	10,963	44,414	1,277	8.58	34.78
태 국	10,329	62,930	967	10.68	65.08
온두라스	6,446	4,762	16	402.88	297.63
카 나 다	4,348	17,626	1,052	0.25	16.75
베 트 남	3,835	8,301	357	10.74	23.25
북 한	3,736	9,758	214	17.46	45.60
기 타	31,015	138,743	3,066	10.12	45.25
합 계	376,486	846,561	20,771	18.13	40.76

자료 : 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연보, 1996

② 국가별 수입검사실적 : 주요 수입국가별 수입검사실적이 물량의 크기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되어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금액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미국, 태국 순으로 나와 있다.

건당 중량과 건당 금액면에서는 온두라스가 가장 많고,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의 순이다. 북한으로부터도 총 214건의 수입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의 기근과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북한내의 위생과 방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채취된 수산물이나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 輸入水産物の 原産地表示制度

원산지 표시제도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국가명(원산지)을 표시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농림수산물은 생산지역명(시,군)을 표시하며, 가공품에 대해서도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및 생산지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농수산물의 구매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원산지표시제도의 도입배경

1989년 GATT BOP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한국은 더이상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농림수산물의 수입제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수입자유화 품목을 예시하고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수산물수입의 전면개방화 일정에 따라 값싼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로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 유통되고 있다. 특히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싸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수산물의 경우(동일어장에서 동일어류를 어획하는 사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는 1991년 7월부터 '농림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1997년 7월 1일 수산물 수입의 전면개방화는 이상과 같은

추세를 앞으로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원산지표시제 시행의 법적 근거

1991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대외무역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제정공포, 1994년말까지 6차 개정)
- 동법 시행령(1987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2191호로 제정 공포, 1995년 7월까지 9차 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1994년 5월14일 통상산업부 고시 '94-57호)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3호로 제정공포)
- 동법 시행령(1993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024호로 제정 공포)
- 동법 시행규칙(1994년 1월 19일 농림수산부령 제1131호로 제정공포, 1994년 10월13일 1차 개정)

위의 법적 근거에 의해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 7월 1일 대외무역법 제31조의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조항에 의해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1993년 5월 1일 85개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을 175개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관세청은 1993년 5월 18일 '원산지관리세칙'을 고시하였다. 1993년 6월 11일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1994년 1월 5일에 농림수산부는 원산지표시 개상품목 HS 4단위 175개 품목을 18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전품목을 지정하였다. 동년 1월 19일에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5월 19일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을 제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11월 1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하여 대상품목을 1개 품목 줄이고 가공품을 추가하여 고시하였다. 한편 농산물검사소에서는 1994년 6월 1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검사 세부실시요령'을 제정 고시하여 다시 11월에 개정 고시하였다. 농림수산부는 1995년 9월 25일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하여 국내 농림축수산물 대상품목을 22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가공품에 대해서도 54개 식품류로 확대하였다. 또 표시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1차 주의경고 없이 미표시 적발시 과태료 처분하고, 과태료 부과 최소단위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 97-6호, 1997년 1월10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사항을 정하고 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세부지침을 개정하였다(97.2.26).

원산지표시제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 규정, 원산지 관리세칙,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요령,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검사요령, 부정행위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3)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통관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관리세칙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하되, 수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으로부터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원

산지표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는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배포 보관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최종구매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경우,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포장되어 유통되는 수입수산물 : (통관후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수입수산물도 포함) 표시는 포장전면의 좌측상단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쇄색도는 포장지 바탕색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포장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랩포장처럼 직접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티커 부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물망을 이용한 재포장의 경우 꼬리표 이용과 내찰을 허용한다.

<표 3-15> 포장유통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포장전면 크기	활자크기
30cm이상×20cm이상 또는 600cm ² 이상	30 포인트 이상
15cm이상×10cm이상 또는 150cm ² 이상	20 포인트 이상
10cm이상× 5cm이상 또는 50cm ² 이상	12 포인트 이상
10cm미만× 5cm이상 또는 50cm ² 이상	8포인트 이상

③ 날개 또는 산물로 유통되는 수입수산물 : (통관후 재포장하지 않고 날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는 수입수산물 포함)

<표 3-16> 날개(산물)유통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구분	표시방법	표시크기
날개판매	현품에 스티카 부착	가로 3cm×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2.5cm이상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가로 15cm×세로 10cm이상
용기판매	포트말에 표시	가로 15cm×세로 10cm이상, 높이 10cm이상
산물거래	상품안내 표시판 (판매장소)	가로 30cm×세로 50cm이상
진열판매	상품안내 표시판 (진열대)	가로7cm×세로 5cm이상

4)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행정기능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검사기관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으로 되어 있으며, 검사기관에서는 시판품의 검사 및 원산지표시 정정 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통관리 전담 기관은 농림수산물의 유통 및 검사관련 행정기관중에서 주무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축·임산물은 국립농산물 검사소, 수산물은 국립수산물검사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통관리 전담기

관의 기능은 원산지표시대상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의 조사·검사 및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수산물검사에 있어서 유통관리전담기관은 국립수산물검사소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이하 검사소장)이 소속공무원중 수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농수산물유통관리검사원(이하 검사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때 검사공무원은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미표시,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검사원이 원산지표시요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의 검사 및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시판품 조사 및 검사시 농수산물 유통관리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유통업소이나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립수산물검사지소장(이하 지소장)은 원산지표시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판품 검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검사반을 운영하며, 시·군, 경찰, 어촌지도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 검사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을 검사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의 시중 유통실태를 검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대상과 장소는 원산지표시대상 수산물의 수입업자, 생산자, 판매업자, 가공업자의 사무실, 영업소, 공장 및 창고 등이며, 원료 수산물 및 제품의 원산지 확인은 외관상의 특성 및 형태, 맛, 냄새 등을 이용한 관능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분류학적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물품검사시 가공, 포장 등으로 외관상 특성과 형태가 심하게 변형되어 원산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물품에 대한 원료공급내역이 불확실한 경우와 검사원이 원산지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자, 생산자 등이 판매자, 가공자, 포장자에게 발행한 당해 수산물의 원료판매에 대한 계약서, 영수증, 송장 등 증빙할 만한 자료

를 통해 원료수불 내역 및 당해물품의 1년간 매출액을 조사한다.

물품검사 및 서류조사시 표시된 원산지가 불확실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과정의 추적 및 역추적이 실시하게 된다.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의 추적조사는 수입 또는 생산단계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역추적조사는 최종판매상으로부터 수입통관 또는 생산시점까지로서 당해 수산물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등을 통하여 원산지의 미표시,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소장은 추적 또는 역추적 조사시 관할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조사가 가능한 해당 지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협조 요청한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협조요청을 받은 지소장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이 1주일이상 소요되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간 조사결과 또는 조사 불가능 사유를 해당 지소장에게 팩스(fax)를 통해 모사전송해야 한다.

검사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위반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원산지표시요령 제9조 제2항의 확인서를 위반자나 대리인에게 징구하고 원산지표시요령의 “과태료부과의견 진술안내서”(이하 진술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서징수일 다음날로부터 15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산하여 의견진술할 단속기관(지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해 주어야 한다.

5)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할 때에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된 국내산 농림수산물 및 수입 농림수산물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 포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물품의 판매장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에 적발당일의 국내산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기 ㉠의 국내산 도매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 시장의 가격이 없을 때에는 인근의 법정도매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도매가격이 없을 때에는 당해품목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3만원으로 하고, 3만원이상은 사사오입하여 만원단위로 부과하되, 부과되는 과태료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원산지표시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소에 비치하고 1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때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723호)에 따라 납입지서도 함께 보낸다.

만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소장이 이의신청서와 단속검사원으로부터의 적발경위서 및 적발시의 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반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송부하여 과태료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의신청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미납된 과태료처분은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 규칙과 국세 및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지소장은 시판품 조사 등 검사를 하였을 때는 검사내역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내역을 원산지표시요령 제19조의 원산지표시 검사일지와 위반업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농수산물가공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령, 원산지 표시요령 등을 따르게 되어 있다.

라.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체계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불리는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수입국내의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1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한다. 동조치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조치 등과는 달리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이므로 그의 발동요건이 무척 까다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동되는데 주로 미국, EC,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 의한 활용이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및 식품, 직물 및 의류, 신발, 철강 등 주로 개도국 수출상품에 집중적으로 발동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EC포함)으로부터의 세이프가드 관련 제소를 받고 있으며, 이중 현재 발효중인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VER포함)는 다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대외무역법의 제정시에 산업영향조사제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1987년 7월 1일 발족된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법제정시 GATT 18조국 졸업이 감안되지 않아 GATT 19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의 근거가 되는 현행 대외무역법 제32조와 관세법 제12조는 각각 1989년 12월 및 1990년 12월 법령 개정을 통해 GATT 19조와 거의 일치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규정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 법적근거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 제26~31조, 동법 시행령 제61~82조, 그리고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조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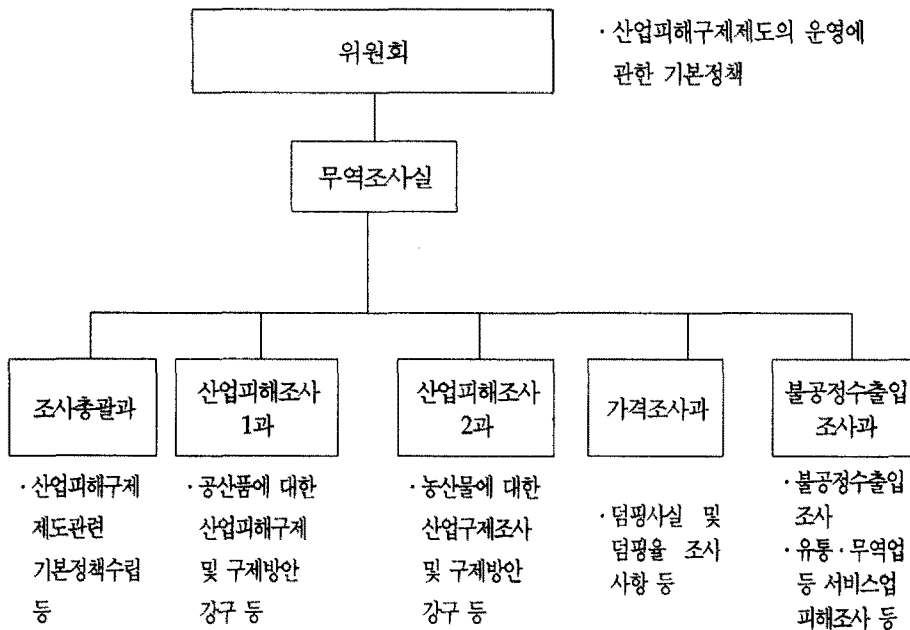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인 무역위원회고시 제90-1호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세이프가드 업무는 산업피해구조 및 판정과 구제조치의 건의에 이르기까지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총괄하여 담당하며, 최종조치에 있어서는 비관세조치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세조치는 재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② 무역위원회 : 무역위원회는 1986년 12월 제정된 대외무역법, 동법시행령, 무역위원회 심의·의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인 무역위원회훈령 제90-1호 등에 근거하여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동조사결과에 따라 산업피해판정 및 구제조치의 건의를 위하여 1987년 7월에 발족된 통상산업부장관 산하의 준독립적 심의·의결기관이다. GATT/BOP 협의대상국으로 사전적 수입관리와 고율관세 및 낮은 양허로 사전에 산업피해예방이 가능했던 우리는 1989년 11월 GATT 18조국으로부터 졸업함에 따라 1989년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동위원회 기능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 첫째,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 판정 및 구제건의
- 둘째, 덤핑·보조금을 받은 물품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
- 셋째,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등 불공정 수입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판정 및 구제건의
- 넷째,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 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판정 및 구제건의
- 다섯째, 수입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및 분석
- 여섯째, 국제무역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 일곱째,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조사 및 제재건의
- 여덟째, 기타 공정무역조장 등 일반적인 조사 및 건의

무역위원회는 통상산업부 소속이지만 대외무역법이 부여한 위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독립적 의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산업피해 유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준수법적인 조사와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의하면 무역위원회는 연임가능한 임기 3년의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상임 1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18> 무역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자 료 : 무역위원회 직제(일부 개정, 1997.7.9)

③ 관세심의위원회 : 관세심의위원회는 관세법 제16조의 2에 법적 근거를 두며 위원장(재정경제원 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된 재정경제원 장관의 비상설자문기구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30에 의하면, 동위원회의 기능은 ①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기타 관세정책에 관하여 재경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관이며 구성원 절반이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신분보장 등이 없고 재경원 장관이 임명하는 등 그 독립성 면에서 무역위원회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업무로서 동위원회는 무역위원회가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정을 내릴 경우, 관련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관세조치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2) 발동요건 및 판정기준

대외무역법 제26조는 특정 물품의 수입 또는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1항에서의 발동요건을 살펴보면, ① 수입수량의 증가 ②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우려 ③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으로 요약된다. '수입수량의 증가'는 GATT 19조의 '수입증가'에 해당되며 다른 나라의 예에서처럼 수입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증가 모두를 포함한다.

'국내산업'이라 함은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한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일·동질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 집단을 말하며, 국내 생산자가 수입을 검하는 경우

에는 국내 생산부분만을, 국내 생산업자가 한가지 이상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부분만이 해당된다.

‘실질적인 피해’는 GATT 19조의 ‘심각한 피해’에 해당되나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GATT 19조의 규정에 비해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적인 피해유무의 결정시 검토사항으로는 ① 공장폐쇄를 포함한 국내산업의 생산시설의 상당한 유희여부, ② 상당수 업체가 합리적인 이윤수준에서 국내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③ 국내산업의 상당한 실업 또는 불완전한 고용여부 등을 고려한다.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유무의 결정시 검토사항으로는 ① 국내사업에 있어서 판매·시장점유율 및 가동율의 감소 또는 재고의 증가 여부, ② 국내산업의 생산·이윤·고용의 감소 또는 임금의 인하추세 여부 등을 고려한다.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1989년 대외무역법 개정 이전에는 ‘수입과 국내사업발전 저해 등과의 인과관계’로서 조사규정에 “당해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발전 저해 등의 실질적이고 다른 요인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이 된 관계”라고 명시하였으나, 법개정 이후 제외되었다.

3) 조사절차 및 구제조치

대외무역법 제26조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이해관계자’라 함)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는 것은 첫째, 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30퍼센트 이상인 산업자이되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당해물의 생산자, 둘째, 당해 국내산업의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을 말한다.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인은 조사규정(제65조)에 명시한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3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중 신청인이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서류, 즉 영업상의 비밀에 대하여는 당해서류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거나 열람에 공여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조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둘째,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심사한 결과,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조사의 개시가 결정되면, 무역위원회는 동위원회 및 당해산업관장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당해산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단체의 임원 및 직원·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설문지·공청회·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의 기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기간중이라도 이해관계자의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며,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영업상 비밀의 보호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구제조치를 결정한다.

- ① 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제한
- ② 관세율의 조정
- ③ 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등을 위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
- ④ 조사대상인 산업의 업종에 대한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업종의 지정
- ⑤ 특정물품 또는 특정무역업자에 대한 수입의 중지 또는 금지
- ⑥ 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조치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날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결정·시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구제조치가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구제조치가 실시된 날로부터 1년마다 그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되,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동분석결과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

4) 문제점 및 과제

무역위원회가 대외무역법에서 부여한 기능에 대해서 독립적 업무수행을 지향하고 있으나, 동위원회의 행정편제상 위상을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무역위원회를 통상산업부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ITC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산업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급하는 기관이 비관세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심

의 의결을 거쳐 통상산업부가 담당하고, 관세조치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경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일관성·종합성·계속성 및 객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효율적인 산업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적어도 공정무역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수단의 운용은 한 기관, 즉 무역위원회의 기능으로 일원화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GATT 19조의 '심각한 피해'의 개념이 불확실하고 그 기준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실질적 피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수정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향후 제소신청자나 무역위원회가 고의가 아닐지라도 자의적인 해석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조사규정에 삽입함이 명확한 법적용을 위해 바람직하다.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자격이 산업피해관계자(이해관계자)와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국한시켰으나, 심의·의결기구인 무역위원회의 자체발의가 가능한지 확실하지가 않다. 비록 무역위원회가 통상산업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통상산업부장관에 의한 조사신청이 가능하겠으나, 민간에 의한 요청지연으로 말미암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때, 연구·조사활동을 통해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무역위원회의 자체발의가 가능하도록 함이 업무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 운용시에는 무역위원회의 자체발의가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를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규정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규정 제9조에 의하면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고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신청자격의 적합성·신청서 또는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등과 당해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

으나, 이러한 협의절차는 제소 또는 조사개시 등에서 제소자의 직접적인 산업피해구제요구를 완화시킬 우려가 있다.

구제조치의 방법으로 기술생산성 향상 지원 및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업발전법 및 조세감면구제법 등 각종 관련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어려움 외에도 그들 조치가 주로 對開途國 예외조항인 GATT 18조 D(자국경제의 개발을 위한 특정산업 설립과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로 간주되므로 이미 11조국으로 이행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향후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한시적인 보호수단이라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상황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관세와 비관세를 선택적으로 또는 혼합형태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구제조치시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국제통상관계를 고려하여 구제조치 기간, 국제내용, 협의 및 보상조치, 구조조정 조치 등에 관해 당해상품 수출국에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GATT 19조 2항은 수입국이 세이프가드 발동시에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GATT에 통보하고 수출국과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여 협의를 실패할 경우에 한해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협의절차를 대외무역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가 향후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우리의 보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판정하는데 있어 대외적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피해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명료하고 공정한 피해평가기준이 정립되어야만 한다.

제도적인 정비가 아무리 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료한 산업피해 판정기준이 없을 때에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의 신뢰성 확보에는 한

계가 있으며, 이는 곧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수입증가와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경제이론 및 고도 통계기법을 활용한 분석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수입개방의 확대는 제조업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수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증대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세이프가드를 수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가 농수산물관련 품목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재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무역 및 유통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시적으로나마 이들 분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이프가드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日本의 輸入管理制度

가. 수출입관리제도의 법체계

일본의 수출입관리제도는 1980년에 개정된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수출입거래법, 관세법 등의 법령 및 고시, 공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은 자유로운 대외거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외거래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관리 또는 조정을 행한다는 취지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은 기본적인 것만을 정하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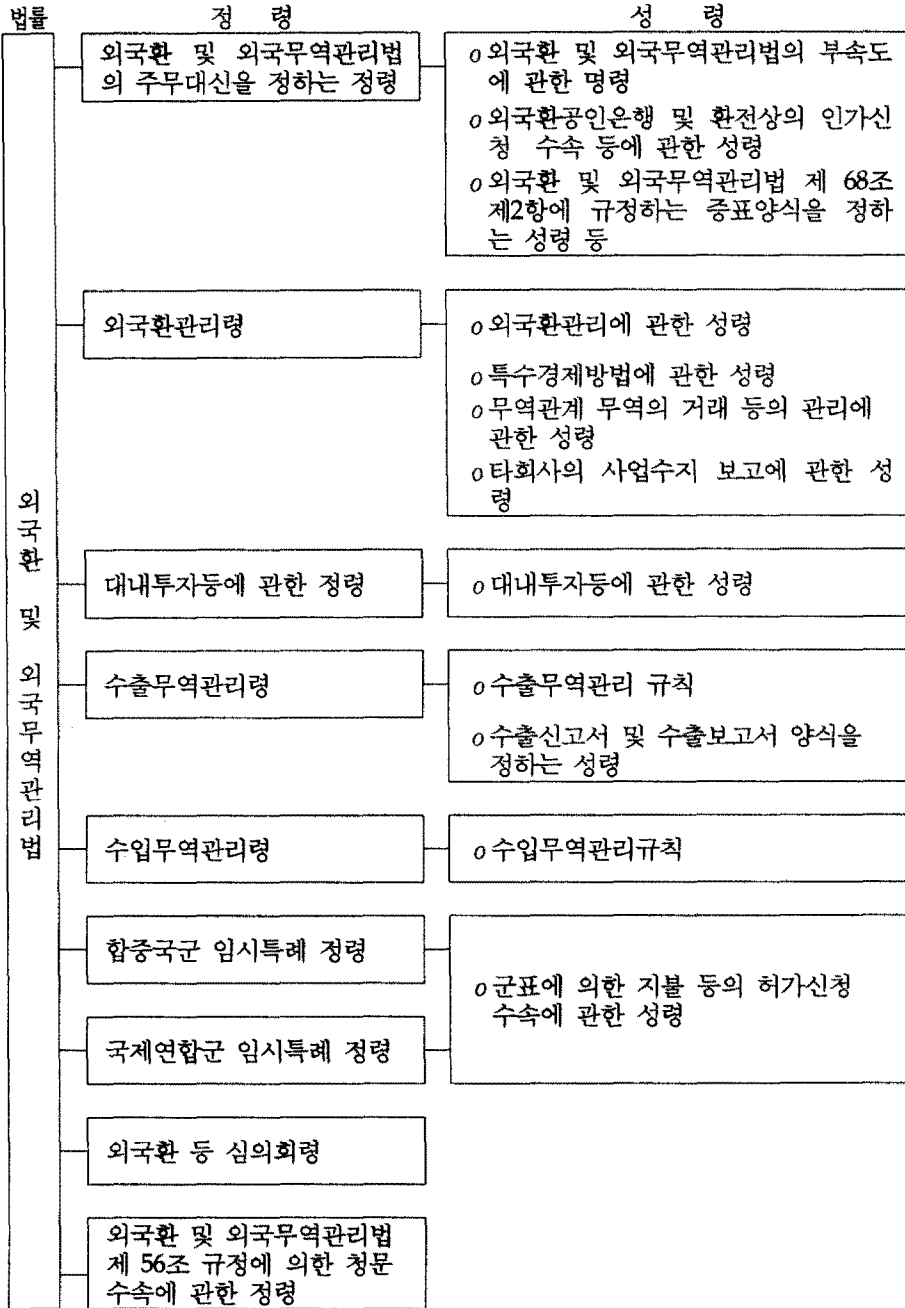
실제운영은 내외정세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임입법 형식에 의해 정령 또는 성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3-17> 일본의 무역관련 법령체계

근거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수출입 거래법
政 令	○ 수출무역관리령 ○ 수입무역관리령	○ 수출무역관리령 ○ 수입무역관리령
省 令	- 수출무역관리규칙 - 수입무역관리규칙	- 수출거래법 시행규칙 - 수출입거래법에 기초한 수출승인에 관한 성령 - 수출입거래법에 기초한 수입승인에 관한 법령

무역거래에 관해서는 통산성과 세관(대장성)으로, 외국환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장성과 일본은행이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다.

<그림 3-19> 일본의 외국인 및 외국무역관리법령 체계



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특징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체계는 그 하위법으로 9개의 정령과 6개의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하위법의 법령체계는 <그림 3-20>과 같다.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특징을 보면, 첫째, 위임입법형식 즉, 법률→정령→성령→고시형태의 체계를 들 수 있다. 물품의 수출입 및 이에 수반되는 외국환은 대내외 경제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에 규정하고 관리절차는 대폭적으로 정령 또는 성령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원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대외거래는 자유무역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관리 또는 제한을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리조정방식으로서 허가 및 승인제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셋째, 외국환은행주의를 들 수 있다. 행정권한을 일본은행 및 외국환은행에게 위임하여 무역관리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환지급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넷째, 수출입허가·승인제도(Negative System)를 들 수 있다. 자유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허가(승인)절차가 없으며, 제한품목, 특수한 대금결제방식 및 지역제한 등 Negative System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승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은 수출입무역관리, 수출입의 적법성 심사 및 특수결제 해당여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의 하나로 수출입보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고대상은 자유화대상품목이나 제한품목에 구분없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화물 총가액이 500만엔 상당액이하 거래는 보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

여섯째, 수출입거래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매 건별, 대금결제 -수출입대금의 회수, 지급상황- 기준의 사후관리 개념이 아니라, 수출입의 적법성 심사 등 일반적인 무역관리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8> 수출·입 보고서 비교

구 분	수출보고서 (2부)	수입보고서(1부)
제출기간	- 세관 및 외국환은행	- 외국환은행
보고대상	- 총가액 500만엔 초과수출	- 총가액 500만엔 초과수입 단, 수입공표에 관련된 화물 수입 →500 만엔 이하도 제출
제출시기	- 세관 → 통관시점 - 외국환은행 → 수출대금 영수시점	- Case별로 상이 · 수입할당품목 → 외국환은행 수입승인신청시점 · 송금 → 송금의뢰시점 · 신용장 → 신용장개설 신청시점 · D/P → 어음결제시점 · D/A → 어음인수시점

수출은 「수출무역관리령」 및 「수출사후심사 사무취급요령」에 의해 총가액 500만엔 이하의 물품(보고서 면제대상)의 수출이 세관의 수출 허가후 계약변경으로 인해 총가액이 500만 엔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세관의 수출허가후 무환수출이 유환수출로 변경된 경우로 그 총가액이 500만엔을 초과하였을 경우도 포함

된다.

수입은 「수입무역관리령」 제17조(수입의 사후심사)에 근거하여, 수입승인대상중 수입할당 또는 원산(선적)지나 특정화물의 수입분에 대해서 동일물품 승인의 적격성 여부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다.

다. 수산물일반에 관한 수입관리제도

어떤 종류의 수산물은 IQ품목에 해당되며, 어떤 종류의 수산물은 수입승인제도 또는 사전확인제도의 대상이다. 또 미리 통산대신의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금지품목도 있다(日本貿易振興會, 商品別 輸入手續ガイド, 1994, 참조).

① IQ에 의한 수산물수입 : 수산물 중 청어, 99개국(국명에 대해서는 통산성 공보 및 통상홍보에 게재됨) 및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대구, 방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가리비, 패주, 건멸치, 그리고 오징어, 건오징어, 명태, 명란, 다시마, 다시마 조제품, 김, 대모(玳瑁) 등이 할당품목이다. 할당의 내용, 신청자의 자격, 신청기일,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할당이 공표되는 통산성공보 및 통상홍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수입승인 : 수산물중 대만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으로 하는 연어, 송어 및 그 조제품, 국제포경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은 국가 또는 동조약의 가맹국으로서 포경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으로 하는 돌고래 및 그 조제품은 수입승인을 필요로 한다. 대만산의 연어, 송어의 경우에는 대만어선이 공해(公海) 등에서 어획한 것은 수입할 수 없다. 돌고래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사전확인 : 선박에 의하여 수입되는 참치 및 황새치류(생선, 냉장, 냉동품에 한함, 날개다랑어를 제외함), 미역 및 국제포경조약 가맹

국으로서 비포경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으로 하는 돌고래 및 그 조정품은 수입무역관리령에 의한 사전확인제도의 대상품목이며, 수입 시에는 통산대신의 확인이 필요하다.

④ 위생검사 : 수산물 등의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 등 수입신청서를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수산물로 정상적으로 검사가 행해지는 것은 유럽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대만 및 홍콩을 원산지로 하는 새우에 대해 봉산 및 아황산검사, 중남미를 원산지로 하는 새우에 대해서는 차아황산 검사 등의 경우이다. 또 양식 뱀장어 및 새우의 경우에 대해서는 항생물질, 농약 및 항균제에 대한 모니터링 잔류검사가 행해진다.

WHO가 매주 발표하는 콜레라 지역의 경우 가열가공하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역법에 의하여 콜레라균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지역으로부터 생선(냉동물 포함) 수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수출국 공적기관의 증명서를 수입신청서류에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⑤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세 : 일본의 경우,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0%에서 최고 40%까지 다양하다. 또 극히 적은 수이지만, 종량세의 물품도 있다.

第 4 章 輸入水産物 流通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본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수입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輸入水産物 流通의 問題點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산물은 공산품의 유통과 달리 취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지니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같은 1차산업의 생산품인 농축산품과도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산물 유통실태상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수입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水産物 流通一般의 問題點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생물인 수산물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에서 파생되는 취급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수산물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에서 파생되는 유통상의 문제점을 우선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구조적 측면에서 수산물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영세한 소

규모 생산자에 의해 분산적으로 생산되며, 자연조건의 변동에 의한 수산물의 일시다확성, 중단성 등의 성격으로 생산량의 변동이 크며 이로 인하여 가격변동이 크다. 또한 상품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수산물의 강한 부패성 때문에 유통상의 시간적 제약이 클 뿐만 아니라, 저장 및 수송시설이나 기술상의 특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특히 생선의 경우에는 선도유지를 위해 보다 많은 비용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가격에 비해 부패가 크며, 상품의 품종과 품질이 다양하여 규격화·표준화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높아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수취가격이 낮다는 점이다. 수산물의 유통마진이 공산품에 비해 높은 것은 수산물이 갖는 상품의 생산구조와 상품자체의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수산물 유통은 공산품 또는 농축산품에 비하여, 생산량·출하량의 조절이 어려워 가격이 불안하며,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거래에 따른 위험이 크므로 유통마진이 높고, 유통단계가 많고 유통경로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유통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통과정상 소수의 기업적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는 공산품은 분산단계만 필요한데 반해 수산물은 생산이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분산단계와 함께 수집단계가 필요하다.

즉 공산품은 생산후 대리점 등을 통해 소매점에 분배하면 되는데 반해 수산물은 생산규모가 적어 효과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일단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에 집하한 후 소매점에 분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통단계가 다단계이어야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유통경로 또한 복잡해진다.

이와 같은 다단계의 유통단계와 복잡한 유통경로는 유통마진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물일가의 원칙에 의하여 가격의 평균화가 이루어지지만, 수산상품의 경

우에는 상품의 특성상 가격의 평균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도매시장에서 가격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도매인과 중매인은 각각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신하여 참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최종가격 결정시 경매사 1인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매인은 비록 다수인의 경쟁을 통하여 가격결정과정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중매인의 숫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결정구조이므로, 도매인과 중매인간 또는 중매인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격담합의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특성상 고선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은 적절한 유통수단 및 기술에 의해 보다 신속하고 보다 값싸게 유통될 수 있는 유통경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경로는 다단계적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가격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산물의 유통경로가 복잡, 다단계적인 가장 큰 요인은 제도상의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산지위판장에서의 경매, 그리고 다시 도매시장에서의 경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2-3단계의 과정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을 높이고, 유통 효율화를 저해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유통정보를 수집하는 대부분의 경우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상인이나 자기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수집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웃이나 친척, 그리고 주변의 판매상인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것은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는 수산물 유통정보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상품의 흐름의 방향과 속도를 규정해주는 것이 바로 유통정보기관이라고 한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산물 유통정보체계의 미비는 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輸入水産物 流通上の 問題點

수산물 유통의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 수입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유통의 일반적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수입수산물 유통상의 문제점으로 유통경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들 수 있다. 세관을 통과한 수입수산물은 국내의 여러 유통경로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분산되고 있다.

도매시장을 통하는 수입수산물도 중도매인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경우와 중도매인으로부터 직판상인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경우, 세관통과후 바로 수산물 가공공장, 또는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로 분산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 대량의 물량은 종합상사에 의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소량의 물량은 전문수입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많은 도·소매업자들은 전문수입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단계로부터 수입경로는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입업자가 유사도매시장이나 신유통업체 등에게 분산하고 잔품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

에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다.

둘째, 이 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마구잡이식 또는 과당경쟁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수산물을 중복하여 수입하는 현상 또는 과잉수입을 초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수산물 비전문업체의 난립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수입업자들의 행동은 국제무역관행이나 기본질서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뿐만 아니라, 수입원산국에서의 국내 수입업자간의 과당경쟁에 의해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까지 낳게 하고 있다.

넷째, 수입수산물의 증가 및 무분별한 수입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수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화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건강 차원에 있어서 그 영향이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수산물의 전면 개방화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산 수산물 가격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수산업계, 특히 연근해어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수입수산물의 증가는 수입 수산물의 관리(또는 국내수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 식생활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도매유통단계에 있어서도 주로 대량의 물량을 수입하는 종합상사가 수입수산물의 공급조절 및 가격을 지배하고 있으며, 거래과정에 있어서도 신용에 의한 거래질서 보다는 관행에 의한 연고판매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품목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국내의 주요산지에서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등 수입관리상의 문제점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소매유통단계에 있어서도 도매단계에서와 대동소이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소매점포에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 조사에 의하면(해양수산부 감사관실, 1997. 9월 조사결과), 조사에 응답한 소비자의 약 62%가 '수산물 전문매장'에서 원산지표시제를 가장 잘 지키며, 그 이외에는 백화점 21.0%, 대형유통점 9.4%, 재래시장 2.7% 등의 순서로 잘 지킨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에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전혀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의 해답은 아직도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비율이 12.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지역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팜플렛을 받아본 적이 있는 소비자가 25%에 불과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여섯째, 수입수산물 정보의 소수 독점화 및 비공개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 유통정보는 종합상사에 의해 생성·전달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유통정보의 흐름 또한 대부분의 경우 공개적이지 못하고 연고에 의한 유선을 통하여 구전으로 전달·처리·소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입수산물의 정보체계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구전에 의하여 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정보의 소수독점화는 물론이고 왜곡,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과학적인 교역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교역정보의 부정확성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흑자산업으로써의 위상을 건고히 해온 수산물 수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제 2 절 輸入水産物 流通의 合理的 改善方向

이상에서 수산물 유통일반의 문제점과 수입수산물 유통실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가운데 주요사항 몇 가지를 요약해보았다.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포괄적인 시점에서 제시하고, 그 다음 수입수산물 유통의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水産物流通의 改善原則

어떤 국가의 유통형태가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유통경비의 절감, 시장의 경쟁력 유지, 유통능률의 제고, 공정한 유통질서구축, 유통단계의 단축, 시설의 근대화, 수산물 가격안정기능의 제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공정한 분배 등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요불급한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다. 유통비용의 증가는 유통마진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식품구입가격을 상승시키며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하락시키는 작용을 한다. 불필요한 유통비용의 증가는 전혀 사회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과정 중에 존재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유통효율을 증진시켜야 한다. 유통효율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는 거래상의 독점력을 배제하여 자율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든가 거래규모를 대형화하여 소위 규모의 경제에 의한 단위당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 및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유통상의 문제만 일으켜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유통비용의 절감이 유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유통개선이 아닌 퇴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할 때에는 유통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용의 절감이 단순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수산물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전 유통수요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통여건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거래상 불리한 입장에 있는 어민이나 소비자의 시장교섭력을 높여 주고 상인들의 부당한 이윤 취득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 도매시장 건설 및 거래제도의 개선, 거래단위의 표준규격화, 유통정보의 효율화, 소비자보호 운동, 유통지원 행정체제의 개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자율경쟁체제를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물 가격의 안정이다. 수산물의 가격은 유통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며 이 가격의 등락이 심할 때 어민의 소득이 불안정해짐은 물론 소비자의 가계지출도 불안정해지고 나아가 전체 물가를 불안정하게 한다. 따라서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수급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 분석에 의한 계획생산과 계획출하, 저장 및 가공시설의 근대화, 수매비축 사업의 탄력적인 운용, 가격손실 보전제도 및 가격예시제의 확대, 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의 보강 등이 있다.

2. 輸入水産物 流通의 合理的 改善方案

1997년도 수산물 수출입 현황과 무역수지에 따르면 수출은 주종품목의 생산부진과 대일 수출단가하락으로 전년대비 8%가 감소한 1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고 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감소로 전년비 2.8%가 감소한 10억 50백만 달러로 나타나 4억50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국면 속에서 수산물 분야는 생선목, 오징어, 김, 계류 등을 주종목으로 하여 중국시장의 개척과 일본시장의 유지로 수출이 증가했으나, 피조개, 고등어 등은 생산감소로 굴, 미역, 넙치, 전갱이 등의 수출은 수요감소 및 값싼 중국수산물과의 경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면에 있어서는 1997년 연말에 불어닥친 IMF영향에 의한 환율 급상승과 수입품에 대한 국민적 기피현상으로 선물용으로 인기를 누리던 바닷가재, 활어 등 고급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 국립수산물검사소에 의하면, 1997년 8백톤이 수입되었던 바닷가재는 올해 2백톤 정도로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냉장연어도 200톤 이상 감소한 약 3백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총공급에 대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9%에서 1996년 25.0%까지 증가하였고(<표2-11> 참조), 또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에 있어서도 1995년 46.0kg으로 1965년 18.0Kg에 비하여 약2.56배나 증가하였다(<표2-12> 참조).

전반적으로 보아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수용인 고급 수산물의 수입증가와 함께 수입개방 품목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수산물의 국내소비량은 매년 증가해왔으며 앞으로

도 절대소비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외환위기, 대량실업의 위기 등 사회경제적 요인 및 그 결과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식료품에 대한 소비가 현실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는 전망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수산물의 소비가 감소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보다도 환경오염, 수산자원고갈, 어업생산의 위축 등에 따라 국내생산만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말미암아 수입수산물에 의한 수급조정이라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에 대한 예측은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것이다.²⁴⁾

이상에서 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수급현황 그리고 수산물이 어떻게 수입되고, 수입된 수산물은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되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수입수산물 유통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입단계에 있어서 수입업자의 난립에 의한 중복수입이나 과잉수입을 방지하여, 중복수입이나 과잉수입에 의하여 외화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 국내의 수입업자간 수입국 현지에서 과당경쟁에 의해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업자 상호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

24) 일본의 경우, 1961년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런데 1964년 겨우 320억엔(수출 1,120억엔)에 불과했던 수산물 수입이 1970년 1,150억엔(수출 1,420억엔), 1971년 1,530억엔(수출 1,470억엔)으로 급증하였다. 이른바 1970년대를 수산물 수입 급증기라고 명명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다. 이와 같은 수입 급증 경향은 고도경제성장기(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따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나타난 수산물 소비의 급증에 대하여, 국내생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문배, “선진지수산업 현황과 미래-일본”, 어민신문, 1998년 신년특집호, 7면.

이와 같은 수입업자들간의 자율적 상설협의체를 통하여 국내수산물 수급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 수입수산물에 대한 품목선정이나 수입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수입상대국의 무역관행조사, 회원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수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수입수산물 유통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통경로의 불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량의 물량은 종합상사가, 소량의 물량은 전문수입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많은 도·소매업자들은 수입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단계로부터 수입경로는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수입업자가 수입물량을 유사도매시장이나 신유통업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산하고, 잔품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상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입통관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유통시스템이라든가,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수입업자 직판체제 등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단기적으로도 현실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과도기적 체제로서 수산물 관련의 공익단체(생산자단체)나 소비자의 도매시장단체(도매시장법인협회), 또는 (가칭)한국수산물수입협회²⁵⁾ 등을 통하여 유통경로를 투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수입수산물의 공급조절 및 가격결정이 현실적으로 대량물량을 수입하는 종합상사나 소수의 수입업자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고, 또한 수입수산물의 거래체제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신용

25) 일본의 경우, 1965년부터 「일본 수산물수입협회」를 설치하여, 수산물 국내공급안정, 적정수입 유도를 행하고 있다.

에 의한 거래질서체제가 아닌 관행이나 연고에 의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에게 불로소득성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소비자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입된 수산물이 담합에 의하여 공급되고 가격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물 수입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넷째로는 수입된 수산물이 국내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국내 유통시장이 효율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아 국내산과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산 품목중에 질적으로 떨어지는 품목의 비율도 적지 않아 처음부터 수입산을 찾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통주체들은 마진율이 높은 수입품의 취급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소기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통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원산지표시제의 목적과 표시내용, 허위 및 미표시에 따른 처벌, 신고요령과 포상금 지급 등의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인 주부들에게 스스로 소비자의 권익을 찾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 모니터링 참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국내산 수산물과 수입수산물의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질이 가격에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는 수산물 산지실명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산 수산물과 국산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수입수산물 정보의 소수독점화 및 비공개성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입수산물 유통정보가 일부 대형종합상사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생성·분산되고 있고 정보유통도 비공개적 연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성행에 의하여 물가불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거래규모의 불확실, 세원추적의 곤란으로 지하경제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정부의 합리적인 수산물 수급정책형성을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도매단계에 있어서 순수 민간유통자본을 대형종합상사에게 예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유통정보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수산물의 효율적인 수급정책 수립 및 수출촉진, 수입관리를 위해 수출입 및 국내유통정보체계 등 관련정보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수출입수산물 정보시스템과 국내유통정보시스템 등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수출입구조 분석, 유통단계별 수입수산물의 유통현황, 수입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파악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외국산의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는 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위해할 가능성은 그 만큼 증가한다. 그러므로 현재 각국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국내 수산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HACCP방식에 의거하여 수입수산물의 수입후 국내유통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⁶⁾

26) 대일본수산회(大日本水産會=大水)에서는 1995년부터 수산청의 보조를 받아 수산식품의 품질관리대책에 관련한 각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실시에 있어서는 대일본수산회 내부에 '품질대책실'을 설치하여 실행체제를 정비했다. 대일본수산회의 '품질대책실'에서의 첫 번째 사업은, 수산업계의 품질관리체제 확립을 목표로 한 종합대책사업으로 ①수많은 수산식품의 품질관리 매뉴얼 작성, ②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제도적 강요에 의하여 수입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보다도 유통참가자들의 인식전환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업자, 대형유통상사, 도매시장, 소매상, 소비자등 수입수산물과 관련되는 수많은 유통참가자들의 공정거래 질서확립 및 유통경로의 투명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구축된 제도는 영구불멸의 제도로서가 아닌, 유통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동작화와 제도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품질관리 지도자의 육성, ③우량품질 관리사업소의 기준책정 등을 실시하여 수산가공업에 대한 품질관리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주문배, “선진국에 있어서 HACCP의 제도화 동향”, 해양수산동향 통권154호(1997. 7), p. 35.

第 5 章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농업과 함께 국민의 영양과 건강에 봉사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그 역할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산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약46%를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형 식생활에도 빼놓을 수 없는 식료이다. 또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식품지향적 소비형태의 변화로 수산물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급어종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시장은 1997년 7월 1일자로 전면적으로 개방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1994년 UR협상의 타결로 국내 수산업은 WTO체제하의 새로운 무역질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은 무한경쟁체제하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수산물 수입은 장기적으로 보면 내수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전체 수산물 수입을 금액면에서 보면, 1980년도 약3,728만 달러에서 1996년도 약10억 8,046만 달러를 기록하여, 1996년도의 금액은 1980년도에 비하면 약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입상품의 종류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산물과 형태나 맛에 있어서 무차별적이며 대부분 국내 소비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

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와 함께 수산물 수입이 국내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수입품목이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거의 파악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수입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으로, ①유통과정의 불투명성, ②수입단계로부터 수입업자의 난립현상, ③유통구조상 거래의 공정성 확보 곤란, ④수산물에 대한 비전문업체의 비합리적 수입으로 인한 중복수입 또는 과잉수입 초래, ⑤수산물 비전문업체의 난립 및 투기성 경쟁적 수입에 의한 국제무역관행 훼손, ⑥수입원산국에서의 국내 수입업자간의 과당경쟁에 의해 수입가격을 상승초래, ⑦무분별한 수입은 식품안전성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 ⑧대형종합상사에 의한 수입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이 지배되고 있음, ⑨신용거래질서 보다는 관행에 의한 연고판매가 주류를 형성, ⑩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유통, ⑪수입수산물 유통정보의 소수 독점화 및 비공개성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입수산물 유통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수입업자들간의 자율적 상설협의체를 통하여 국내수산물 수급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 수입수산물에 대한 품목선정이나 수입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수입상대국의 무역관행조사, 회원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수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유통상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입통관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유통시스템 구축방안을 제기하였으며,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수입업자 직판체제도 제시하였다. 또 과도기적 체제로서 수산물 관련 의 공익단체(생산자단체)나 소비자의 도매시장단체(도매시장법인협회), 또는 (가칭)한국수산물수입협회를 중심으로 수입수산물을 합리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제기하였다.

셋째, 수입된 수산물이 담합에 의하여 공급되고 가격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물 수입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통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수산물 산지실명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산 수산물과 국산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섯째, 수출입수산물 정보시스템과 국내유통정보시스템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출입구조 분석, 유통단계별 수입수산물의 유통현황, 수입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파악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이외에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정착 필요, 끝으로 어떤 제도적 강요에 의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보다도 유통참가자들의 인식전환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구축된 제도는 영구불멸의 제도로서가 아닌, 유통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동작화와 제도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무역자유화 시대에 즈음하여 합리적인 수산유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ii) 수입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수입수산물 유통에 대한 선행 연구나 자료가 전무한 상태였고, 또한 실태조사과정에서 업계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조사가 용이하지 않았다. 앞으로 보다 광범하고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연실, 『수산물 직거래에 관한 연구』, 부산수대, 박사학위논문, 1994.
- 관세홍보사, 『대외무역법과 수출입관련특별법』, 1997.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연보』, 각연도.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시장동향』, 각호.
- 김광근, “수산물유통의 실태,” 『수산계』, 1992. 1/2.
- 김동환, 전창곤, 『농산물 유통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박동규, 유남식,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 박성쾌, 김정봉, 신영태,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연도.
- 옥영수, 김성채, 『WTO체제하의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 이재옥 외,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이춘삼, 『무역관계법』, 법문사, 1996.
- 조병택, 이영준, 『일본의 수입품유통과 유통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연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연도.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업무요람』, 1997.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수출입관리 시스템의 비교를 통해 본 수출입제도 개편 및 사후관리 방안』, 1996.

한국수산물회, 『수산물연감』, 각연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심포지엄결과보고』, 1997.

한홍렬, 『원산지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실적』, 각연도.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997.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연도.

2. 외국문헌

小野征一郎・堀口健治 編著, 『日本漁業の經濟分析 - 縮小と再編の論理』, 農林統計協會, 1992.

外國爲替研究協會, 『外國爲替・貿易小六法』(平成九年版), 1997.

株式會社 大月書店, 『日本と歐美の流通政策』, 株式會社 大月書店, 1995.

三國英實 編著, 『現代流通論①今日の食品流通』, 大月書店, 1995

西村 林, 『現代流通論』, 中央經濟社, 1996.

厚生省生活衛生局監修, 『食品輸入の實務』, 日本食品衛生協會, 1992.

梶原昭次, 『貿易のしくみ』, 日本實業出版社, 1997.

高橋伊一, 『輸入農水産物 - 輸入制度と國內流通-』, 農林統計協會, 1981, 11.

日本貿易振興會(JETRO), 『ECの共同漁業政策』, 海外農林水産情報 Vol 31, 1990, 6.

日本貿易振興會(JETRO), 『農林水産物の貿易』, 1978 ~ 1990.

日本貿易振興會, 『アグロトレド・ハンドブック '96』, 日本貿易振興會, 1996.

日本水産廳, 『21世紀の 水産業へのアプロ-チ』, 圖設 漁業問題研究會 中間報告書, 1988, 4.

日本水産政策検討會, 『日本水産政策検討會 中間報告』, 1997.

農林統計協會, 『圖說 漁業白書』, 1995, 1996, 1997.